

서울특별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안번호
3696, 3697, 3698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실)



2026. 6. 15.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3696, 3697, 3698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6. 05. 26

다. 회 부 일 : 2026. 05. 27.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7,292,631백만원

○ 징수결정액 : 7,222,546백만원

○ 실제수납액 : 7,210,822백만원

○ 미 수 납 액 : 11,724백만원

○ 결 손 처 분 : 1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8%(전년도 99.9%)임.

<표>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산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7,292,631	7,222,546	7,210,822	1	11,724	99.8%
일반회계	5,279,836	5,253,327	5,242,498	1	10,829	99.8%
200 세외수입	96,872	111,056	100,234	1	10,822	90.3%
210 경상적세외수입	13,508	16,319	15,877	-	442	97.3%
211 재산임대수입	1,481	1,328	1,328	-	-	10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481	1,328	1,328	-	-	10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잔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212 사용료수입	79	637	631	-	6	99.1%
	212-08 주차요금수입	79	347	341	-	6	98.3%
	212-08 기타사용료	-	290	290	-	-	100.0%
	213 수수료수입	47	49	49	-	-	100.0%
	213-01 증지수입	47	49	49	-	-	100.0%
	214 사업수입	10,722	10,995	10,666	-	329	97.0%
	214-09 기타사업수입	10,722	10,995	10,666	-	329	97.0%
	216 이자수입	1,180	3,310	3,203	-	107	96.8%
	216-06 기타이자수입	1,180	3,310	3,203	-	107	96.8%
	220 임시적세외수입	80,664	87,472	83,601	-	3,871	95.6%
	221 재산매각수입	86	59	59	-	-	100.0%
	221-04 불용품매각대금	86	59	59	-	-	100.0%
	223 보조금반환수입	71,546	77,570	73,702	-	3,868	95.0%
	223-01 시·도비반환금수입	56,155	71,608	67,997	-	3,611	95.0%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9,883	3,615	3,434	-	182	95.0%
	223-03 위탁비반환수입	5,507	2,347	2,271	-	76	96.8%
	224 기타수입	9,032	9,843	9,840	-	3	100.0%
	224-07 그외수입	9,032	9,843	9,840	-	3	100.0%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5	91	2	-	89	1.8%
	233 변상금	5	90	1	-	89	1.3%
	233-01 변상금	5	90	1	-	89	1.3%
	234 과태료	-	1	1	-	-	100.0%
	234-02 기타과태료	-	1	1	-	-	100.0%
	235 환수금	-	31	1	-	30	2.0%
	235-01 부정이익환수금	-	31	1	-	30	2.0%
	240 지난연도수입	2,694	7,145	755	1	6,390	10.6%
	241-01 지난연도수입	2,694	7,145	755	1	6,390	10.6%
300 지방교부세		286	-	-	-	-	0.0%
	310 지방교부세	286	-	-	-	-	0.0%
	311 지방교부세	286	-	-	-	-	0.0%
	311-02 특별교부세	286	-	-	-	-	0.0%
500 보조금		5,164,907	5,125,592	5,125,592	-	-	100.0%
	510 국고보조금등	5,164,907	5,125,592	5,125,592	-	-	100.0%
	511 국고보조금등	5,164,907	5,125,592	5,125,592	-	-	100.0%
	511-01 국고보조금	5,119,374	5,080,122	5,080,122	-	-	10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339	33,276	33,276	-	-	100.0%
	511-03 기금	12,194	12,194	12,194	-	-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771	16,679	16,672	-	8	100.0%
	710 보전수입등	17,771	16,679	16,672	-	8	100.0%
	712 전년도이월금	16,451	16,451	16,451	-	-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6,451	16,451	16,451	-	-	1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21	29	29	-	-	1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1	29	29	-	-	100.0%
	715 보조금등 반환금	1,298	200	192	-	8	96.0%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298	200	192	-	8	96.0%
균형발전특별회계		10,636	10,636	10,636	-	-	100.0%
500 보조금		10,552	10,552	10,552	-	-	100.0%
	510 국고보조금등	10,552	10,552	10,552	-	-	100.0%
	511 국고보조금등	10,552	10,552	10,552	-	-	100.0%
	511-02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552	10,552	10,552	-	-	10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잔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	84	84	-	-	100.0%
	710 보전수입등	84	84	84	-	-	100.0%
	712 전년도이월금	84	84	84	-	-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4	84	84	-	-	100.0%
	의료급여특별회계	2,002,160	1,958,583	1,957,688	-	895	100.0%
200	세외수입	5,113	4,048	3,153	-	895	77.9%
	210 경상적세외수입	1,416	140	140	-	-	100.0%
	216 이자수입	1,416	140	140	-	-	1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416	140	140	-	-	1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923	2,371	2,326	-	46	98.1%
	224 기타수입	2,923	2,371	2,326	-	46	98.1%
	224-07 그외수입	2,923	2,371	2,326	-	46	98.1%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774	1,400	688	-	712	49.1%
	231 과징금	774	1,400	688	-	712	49.1%
	231-01 과징금	774	1,400	688	-	712	49.1%
	240 지난연도 수입	-	137	-	-	137	0%
	224 지난연도수입	-	137	-	-	137	0%
	224-01 지난연도수입	-	137	-	-	137	0%
500	보조금	1,019,580	977,068	977,068	-	-	100.0%
	510 국고보조금등	1,019,580	977,068	977,068	-	-	100.0%
	511 국고보조금등	1,019,580	977,068	977,068	-	-	100.0%
	511-01 국고보조금	1,019,580	977,068	977,068	-	-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7,467	977,467	977,467	-	-	100.0%
	710 보전수입등	20,511	20,511	20,511	-	-	100.0%
	711 잉여금	20,511	20,511	20,511	-	-	100.0%
	711-01 순세계잉여금	20,511	20,511	20,511	-	-	100.0%
	720 내부거래	956,956	956,956	956,956	-	-	100.0%
	721 전입금	956,956	956,956	956,956	-	-	1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956,956	956,956	956,956	-	-	100.0%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11,413,574백만원
- 예산증감 : 704,898백만원
- 예산현액 : 11,445,358백만원
- 지 출 액 : 11,292,663백만원
- 이 월 액 : 12,134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25,825백만원
- 불 용 액 : 114,737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2%(전년도 2.1%)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14,737	16,366	1	71,679	205	26,486	-

<표> 2025년도 복지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 B-C-D)	불용률
복지실 합계		11,445,358	11,292,663	12,134	25,825	114,737	1.2%
일반회계 소계		9,427,269	9,339,407	12,134	5,635	70,093	0.7%
복지정책과		2,857,180	2,832,271	-	587	24,322	0.9%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833,407	1,808,942	-	587	23,879	1.3%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168,335	166,020	-	74	2,242	1.3%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580,568	1,559,671	-	513	20,385	1.3%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0,490	9,629	-	-	861	8.2%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74,014	73,623	-	-	392	0.5%
	행정운영경비(복지실 복지정책과)	464	413	-	-	51	11.0%
	기본경비	349	299	-	-	51	14.6%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114	114	-	-	-	0.0%
	일반예산(재무활동)	1,023,309	1,022,917	-	-	393	0.0%
	내부거래지출(복지실 복지정책과)	1,014,562	1,014,562	-	-	-	0.0%
	보전지출(복지실 복지정책과)	8,747	8,355	-	-	393	4.5%
디딤돌소득과		14,035	13,319	-	-	716	5.1%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미래사회복지 구현	14,009	13,293	-	-	716	3.6%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정립	14,009	13,293	-	-	716	3.6%
	행정운영경비(복지실 디딤돌소득과)	26	26	-	-	-	0.0%
	기본경비	26	26	-	-	-	0.0%
장애인복지과		280,000	274,747	102	2,828	2,324	0.8%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274,619	269,505	102	2,828	2,184	0.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270,808	265,953	102	2,828	1,926	0.7%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3,260	3,119	-	-	141	4.3%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550	433	-	-	117	21.3%
	행정운영경비(복지실 장애인복지과)	8	7	-	-	-	0.6%
	기본경비	8	7	-	-	-	0.6%
	일반예산(재무활동)	5,334	5,194	-	-	140	2.6%
	보전지출(복지실 장애인복지과)	5,334	5,194	-	-	140	2.6%
	장애인자립지원과		1,391,317	1,379,162	3,691	1,914	6,551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 B-C-D)	불용률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1,387,847	1,375,783	3,691	1,914	6,460	0.5%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21,003	20,999	-	-	4	0.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1,241,013	1,233,935	-	1,825	5,253	0.4%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113,094	112,111	-	89	894	0.8%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12,737	8,738	3,691	-	309	2.4%
	재무활동(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420	3,330	-	-	91	2.6%
	보전지출(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420	3,330	-	-	91	2.6%
	행정운영경비(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50	50	-	-	-	0.0%
	기본경비	50	50	-	-	-	0.0%
자활지원과		307,360	294,970	879	-	11,511	3.7%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71,136	68,422	492	-	2,222	3.1%
	노숙인 자활지원	45,526	43,669	492	-	1,365	3.0%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5,610	24,573	-	-	857	3.3%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236,187	226,510	387	-	9,290	3.9%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236,187	226,510	387	-	9,290	3.9%
	행정운영경비(복지실 자활지원과)	37	37	-	-	-	0.3%
	기본경비	37	37	-	-	-	0.3%
어르신복지과		3,918,724	3,888,018	7,462	306	22,937	0.6%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3,918,655	3,887,950	7,462	306	22,937	0.6%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18,938	11,531	6,985	187	236	1.2%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3,451,331	3,429,491	-	-	21,840	0.6%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2,646	2,646	-	-	-	0.0%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45,914	45,913	-	-	1	0.0%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399,826	398,370	478	119	860	0.2%
	행정운영경비(복지실 어르신복지과)	69	69	-	-	-	0.0%
	기본경비	69	69	-	-	-	0.0%
고독대응과		75,971	75,509	-	-	462	0.6%
	고립은둔위기가구 예방발굴 및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75,933	75,471	-	-	462	0.6%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10,192	10,006	-	-	186	0.0%
	독거·취약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65,741	65,465	-	-	275	1.8%
	행정운영경비(복지실 고독대응과)	38	38	-	-	-	0.8%
	기본경비	38	38	-	-	-	0.8%
돌봄복지과		576,281	575,114	-	1	1,167	0.2%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 B-C-D)	불용률
	민관복지협치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업자대발굴지원	300,017	299,029	-	1	987	0.3%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101,463	100,486	-	-	977	1.0%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업자대발굴 지원 등	198,554	198,543	-	1	10	0.0%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276,218	276,039	-	-	179	0.1%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276,218	276,039	-	-	179	0.1%
	행정운영경비(복지실 돌봄복지과)	46	46	-	-	-	0.0%
	기본경비	46	46	-	-	-	0.0%
1인가구지원과		6,399	6,296	-	-	103	1.6%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	6,364	6,261	-	-	103	1.6%
	1인가구 안전인프라 구축 및 건강돌봄체계 마련	2,772	2,760	-	-	11	0.4%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회관계망 회복 지원	3,592	3,501	-	-	92	2.5%
	행정운영경비(복지실 1인가구지원과)	36	36	-	-	-	0.0%
	기본경비	36	36	-	-	-	0.0%
균형발전특별회계 소계		15,930	15,850	-	61	18	0.1%
복지정책과		12,784	12,705	-	61	18	0.1%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2,784	12,705	-	61	18	0.1%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12,784	12,705	-	61	18	0.1%
돌봄복지과		3,146	3,146	-	-	-	0.0%
	민관복지협치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업자대발굴지원	3,146	3,146	-	-	-	0.0%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업자대발굴 지원 등	3,146	3,146	-	-	-	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계		2,002,160	1,937,406	-	20,128	44,625	2.2%
복지정책과		2,002,160	1,937,406	-	20,128	44,625	2.2%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2,002,160	1,937,406	-	20,128	44,625	2.2%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2,002,160	1,937,406	-	20,128	44,625	2.2%

가. 예산 이용 : 없음

나. 예산 전용 : 총 26건, 1,818백만원

다. 예산 이체 : 16건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 40건, 15,451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총 2건, 25,058백만원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총 16건, 12,134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합계	8,957,574	6,113,724	8,816,671	13,530	101,363
당해(소계)	8,945,990	6,113,212	8,812,040	6,765	101,361
일반회계	6,927,901	5,125,592	6,858,784	6,765	56,717
균형발전특별회계	15,930	10,552	15,850	—	1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2,160	977,068	1,937,406	—	44,625
명시이월(소계)	11,584	512	4,631	6,765	2
일반회계	11,584	512	4,631	6,765	2

3.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5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180,330	1,487	76,363	74,876	181,81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2,132	24	517	493	12,156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1,810	△118	3,842	3,960	21,69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9,308	△148	829	977	9,16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37,080	1,729	71,175	69,446	138,809

4. 채권현재액 : 9,958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5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토지 6,534,075 m^2 1,723,589백만원,
 - 건물 377,576 m^2 738,258백만원,
 - 기타 29건 4,727백만원,
- 총 2,466,574만원 상당의 금액

<표> 2025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5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2,384,346	82,228		2,466,574
행정 재산	계	2,366,922	77,866		2,444,788
	공용재산	1,303,209	54,625		1,357,834
	공공용재산	1,055,547	23,001		1,078,548
	기업용재산	8,166	240		8,406
	보존재산	-	-		-
일반재산		17,424	4,362		21,786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25년도 말 복지실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51개, 현재액 69백만원

<표> 2025년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24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5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49		2	2				51
	금액	67		2	2				69
일반회계	수량	49		2	2				51
	금액	67		2	2				69

IV.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1 세입 결산 검토

가. 세입결산 총괄 개요

- 2025 회계연도 복지실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7조 2,926억 3천 1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조 2,225억 4천 6백만원임. 징수결정액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7조 2,108억 2천 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7억 2천 4백만원으로, 수납률은 99.8%로 나타남.

<표>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산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7,292,631	7,222,546	7,210,822	1	11,724	99.8%
일반회계	5,279,836	5,253,327	5,242,498	1	10,829	99.8%
200 세외수입	96,872	111,056	100,234	1	10,822	90.3%
210 경상적세외수입	13,508	16,319	15,877	-	442	97.3%
211 재산임대수입	1,481	1,328	1,328	-	-	10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481	1,328	1,328	-	-	100.0%
212 사용료수입	79	637	631	-	6	99.1%
212-08 주차요금수입	79	347	341	-	6	98.3%
212-08 기타사용료	-	290	290	-	-	100.0%
213 수수료수입	47	49	49	-	-	100.0%
213-01 증지수입	47	49	49	-	-	100.0%
214 사업수입	10,722	10,995	10,666	-	329	97.0%
214-09 기타사업수입	10,722	10,995	10,666	-	329	97.0%
216 이자수입	1,180	3,310	3,203	-	107	96.8%
216-06 기타이자수입	1,180	3,310	3,203	-	107	96.8%
220 임시적세외수입	80,664	87,472	83,601	-	3,871	95.6%
221 재산매각수입	86	59	59	-	-	100.0%
221-04 불용품매각대금	86	59	59	-	-	100.0%
223 보조금반환수입	71,546	77,570	73,702	-	3,868	95.0%
223-01 시·도비반환금수입	56,155	71,608	67,997	-	3,611	95.0%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9,883	3,615	3,434	-	182	95.0%
223-03 위탁비반환수입	5,507	2,347	2,271	-	76	96.8%
224 기타수입	9,032	9,843	9,840	-	3	100.0%
224-07 그외수입	9,032	9,843	9,840	-	3	100.0%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5	91	2	-	89	1.8%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잔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233	변상금	5	90	1	-	89	1.3%
		233-01 변상금	5	90	1	-	89	1.3%
	234	과태료	-	1	1	-	-	100.0%
		234-02 기타과태료	-	1	1	-	-	100.0%
	235	환수금	-	31	1	-	30	2.0%
		235-01 부정이익환수금	-	31	1	-	30	2.0%
	240	지난연도수입	2,694	7,145	755	1	6,390	10.6%
		241-01 지난연도수입	2,694	7,145	755	1	6,390	10.6%
300 지방교부세			286	-	-	-	-	0.0%
	310	지방교부세	286	-	-	-	-	0.0%
		311 지방교부세	286	-	-	-	-	0.0%
		311-02 특별교부세	286	-	-	-	-	0.0%
500 보조금			5,164,907	5,125,592	5,125,592	-	-	100.0%
	510	국고보조금등	5,164,907	5,125,592	5,125,592	-	-	100.0%
		511 국고보조금등	5,164,907	5,125,592	5,125,592	-	-	100.0%
		511-01 국고보조금	5,119,374	5,080,122	5,080,122	-	-	10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339	33,276	33,276	-	-	100.0%
		511-03 기금	12,194	12,194	12,194	-	-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771	16,679	16,672	-	8	100.0%
	710	보전수입등	17,771	16,679	16,672	-	8	100.0%
		712 전년도이월금	16,451	16,451	16,451	-	-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6,451	16,451	16,451	-	-	1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21	29	29	-	-	1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1	29	29	-	-	100.0%
		715 보조금등 반환금	1,298	200	192	-	8	96.0%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298	200	192	-	8	96.0%
균형발전특별회계			10,636	10,636	10,636	-	-	100.0%
500 보조금			10,552	10,552	10,552	-	-	100.0%
	510	국고보조금등	10,552	10,552	10,552	-	-	100.0%
		511 국고보조금등	10,552	10,552	10,552	-	-	10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552	10,552	10,552	-	-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	84	84	-	-	100.0%
	710	보전수입등	84	84	84	-	-	100.0%
		712 전년도이월금	84	84	84	-	-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4	84	84	-	-	100.0%
의료급여특별회계			2,002,160	1,958,583	1,957,688	-	895	100.0%
200 세외수입			5,113	4,048	3,153	-	895	77.9%
	210	경상적세외수입	1,416	140	140	-	-	100.0%
		216 이자수입	1,416	140	140	-	-	1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416	140	140	-	-	1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923	2,371	2,326	-	46	98.1%
		224 기타수입	2,923	2,371	2,326	-	46	98.1%
		224-07 그외수입	2,923	2,371	2,326	-	46	98.1%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774	1,400	688	-	712	49.1%
		231 과징금	774	1,400	688	-	712	49.1%
		231-01 과징금	774	1,400	688	-	712	49.1%
	240	지난연도 수입	-	137	-	-	137	0%
		224 지난연도수입	-	137	-	-	137	0%
		224-01 지난연도수입	-	137	-	-	137	0%
500보조금			1,019,580	977,068	977,068	-	-	10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510국고보조금등	1,019,580	977,068	977,068	-	-	100.0%
	511 국고보조금등	1,019,580	977,068	977,068	-	-	100.0%
	511-01 국고보조금	1,019,580	977,068	977,068	-	-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7,467	977,467	977,467	-	-	100.0%
	710 보전수입등	20,511	20,511	20,511	-	-	100.0%
	711 잉여금	20,511	20,511	20,511	-	-	100.0%
	711-01 순세계잉여금	20,511	20,511	20,511	-	-	100.0%
	720 내부거래	956,956	956,956	956,956	-	-	100.0%
	721 전입금	956,956	956,956	956,956	-	-	1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956,956	956,956	956,956	-	-	100.0%

- 최근 3년간 복지실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지속적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높아지는 추세임.

<표> 복지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25	5,279,836	5,253,327	5,242,498	1	10,829	99.8
2024	4,885,623	4,805,134	4,797,962	14	7,158	99.9
2023	4,390,749	4,338,293	4,331,672	0	6,621	99.8

○ 복지실 과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세입예산이 가장 많은 과는 어르신복지
과로 총 세입예산액은 3조 2,574억 2천만원이며(수납률 99.8%), 수납률이
가장 저조한 과는 디딤돌소득과로 전체 징수결정액 679만원 가운데 235만원
(수납률 57.1%)를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디딤돌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 '25년 하반기 정산 및 확인조사 결과 디
딤돌소득 과다 지급에 따른 환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총 7가구가 근로소득 과
소반영, 국가기초생활 보장 수급액 오기 등으로 환수대상에 해당됨. 집행기관
에서는 참여가구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납을 추진중에 있음.

<표> 2025년도 복지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복지실	5,279,836	5,279,836	5,253,327	5,242,498	1	10,829	99.8%
복지기획관	1,941,105	1,941,105	1,931,905	1,927,361	-	4,544	99.8%
복지정책과	1,093,173	1,093,173	1,080,455	1,080,359	-	96	99.9%
디딤돌소득과	-	-	7	4	-	2	57.1%
장애인복지과	64,481	64,481	65,725	63,150	-	2,574	96.1%
장애인자립지원과	614,411	614,411	618,271	616,767	-	1,504	99.8%
자활지원과	169,040	169,040	167,448	167,081	-	366	99.8%
돌봄기획관	3,338,731	3,338,731	3,321,422	3,315,137	-	6,286	99.8%
어르신복지과	3,273,051	3,273,051	3,257,421	3,251,583	-	5,838	99.8%
고독대응과	25,465	25,465	25,314	25,147	-	166	99.3%
돌봄복지과	39,710	39,710	38,471	38,193	-	278	99.3%
1인가구지원과	505	505	217	213	-	4	98.2%

나. 세입예산 집행 점검

- 복지실 소관 '25년도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20% 이상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예산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 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 비율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10,802	37,606	37,606	26,804	(장애인자립지원과) 세입 통계목 착오로 세입예산 편성 된 공유재산임대료를 기타사용료로 세외수입 고지 (자활지원과) 남대문 기부채납시설 임대료는 2025년 9월확정 후 10월부터 징 수됨에 따라, 2025년 세입예산에 미반영되어 예산액과 실제징수액 간 차이 발생	248.1%
212-08 주차요금 수입	0	267,551	267,551	267,551	(돌봄복지과)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차이 발생 (운영비 별도 교부, 주차 료 수입은 시 세외수입 처리)	100.0%
212-09 기타 사용료	0	289,534	289,534	289,534	(장애인자립지원과) 세입 통계목 착오로 세입예산 편성 된 공유재산임대료를 기타사용료로 세외수입 고지 (어르신복지과) 공유재산임대료수입 통계목 착오로 발생 (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	100.0%
216-06 기타 이자수입	1,128,756	3,257,873	3,150,773	2,022,017	◦ 보조금 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 산정 이전 편성하여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179.1%
216-04 불용품 매각대금	23,748	4,049	4,049	-19,699	(어르신복지과) 보조금 정산을 통해 금액 산정 이전 편성하여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83.0%
223-01 시도비 반환금수입	32,545,758	46,306,442	44,752,394	12,206,636	◦ 보조금 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 산정 이전 편성하여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37.5%
223-02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7,866,359	1,860,527	1,678,812	-6,187,547	◦ 보조금 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 산정 이전 편성하여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78.7%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 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 비율
223-03 위탁비 반환수입	5,507,373	2,346,689	2,271,214	-3,236,159	◦ 보조금 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 산정 이전 편성하여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58.8%
224-07 그외수입	1,092,432	2,254,505	2,252,150	1,159,718	◦ 결산액 평균치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106.2%
233-01 변상금	5,389	4,398	1,200	-4,189	(어르신복지과) 변상금 부과대상 중 미납	-77.7%
234-02 기타 과태료	0	360	360	360	◦ 세입편성 당시 예측 불가 한 세입 발생(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100.0%
235-01 부정이익 환수금	0	560	560	560	(어르신복지과) 보조사업 회계검증결과 일부 금액이 불인정 금액으로 인정되어 반환금 발생	100.0%
225-01 지난년도 수입	2,693,948	7,144,830	755,024	-1,938,924	◦ 지난연도 보조금 잔액, 발생이자 미반납액 등으로 자치구 추경 미편성 등으로 부족 수납	-72.0%
311-02 특별 교부세	286,400	0	0	-286,400	(자활지원과) 노숙인·쫓방촌 폭염 및 한파 대비를 위해 교부된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서, 서울시 총괄 부서인 재난안전 예방과에서 일괄 세입처리 하여 자활지원과는 실제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100.0%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1,262	28,476	28,476	7,214	◦ 결산액 평균치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33.9%
715-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120,097	43,018	43,018	-1,077,079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수납 과정에서 세입 과목 선택 오류로 인한 미편성 세입 과목 발생 및 이로 인한 차이 발생	-96.2%

- 복지실의 '25년 세외수입 결산 결과, 일부 세입과목에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간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 중에는 징수·수납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세입과목 적용 오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장애인자립지원과의 경우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시립시설) 부지에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사용대가로 2010년부터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매년 1회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음. 당초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실제 징수·수납 과정에서 기타사용료로 처리되어 예산 편성과목과 결산상 수납과목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음.
- 또한,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승화원·추모공원 및 전기차 급속충전기 토지사용료를 당초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단계에서 일부 금액을 '기타사용료'로 세입처리하게 되면서 예산 편성과목과 결산상 수납과목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음.
- 세외수입은 수입의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적정한 과목으로 편성·징수되어야 하므로, 향후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수결의 및 수납 단계에서 세입과목 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난년도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26억, 징수 결정액은 70억, 실제 수납액은 6억 7천만원에 그치는 등 과도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25 회계연도 복지실 지난연도 수입 상세 내역

(단위: 원)

부서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내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88,073,000	34,982,770	32,394,870	2,587,900	◦ 3.1운동 100주년 공모사업 시비반납이자 (242,820원) ◦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보조금 발생이자 (27,960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비발생이자, 환수금 및 과오청구 반환금 (2,317,120원)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136,867,950	0	136,867,950	◦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체납 내역 10건
장애인복지과	153,439,000	2,502,390,660	44,434,130	2,457,956,530	◦ '22~'23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보조금 반납금 이중부과 (1,414백만원) ◦ 장애인거주시설(인강원) 보조금 환수금 등 (1,027백만원)
장애인자립 지원과	567,007,000	196,687,310	47,113,040	149,574,27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보조금 집행잔액 (108,727,090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보조금 발생이자 (40,505,130원) ◦ 장애인 희망일자리 보험료 환급금 (342,050원)
자활지원과	187,813,000	146,861,640	112,869,590	33,992,050	◦ 2019년 노숙인 희망프레임 사업 집행부적정 등 보조금반환이자 (3,186,190원) ◦ 2019년 노숙인 희망프레임 사업 집행부적정 등보조금반환명령 (29,479,400원) ◦ 2018년 노숙인 일자리 사업 이자 (14,820원) ◦ 소송비용 (1,311,640원)
어르신복지과	1,390,024,000	4,082,197,050	452,426,220	3,629,770,830	◦ 어르신복지과 보조사업

부서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내역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 시립장사시설 이용요금 (관리비, 재사용료) 체납 등
고독대응과	0	36,796,490	36,796,490	0	〈예산미편성 사유〉 '24년 7월 신설부서로 예산 편성 당시 최근 1년 평균세입액 미발생에 따라 예산 미편성하였으나, 지난 년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환금 발생
돌봄복지과	301,952,000	133,634,270	17,715,720	115,769,290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발생이자 반납 등
1인가구지원과	5,640,000	11,279,410	11,274,080	5,330	◦ 1인가구 상담 멘토링 사업 이자 반납

○ 미수납액이 가장 높은 과는 어르신복지과로, 징수결정액 40억 8,219만원 가운데 36억 2,977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9천1백만원,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체납금 10억 1천3백만원임.

- 시립장사시설의 분묘·봉안 사용기한이 장기화되면서 관리비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거나, 연락두절이 된 유족 및 신원파악 곤란 등의 이유로 체납누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이며, 이후 사용기간이 경과한 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한번에 5년씩 세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함.
- 현재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 고지 및 체납분에 대한 고지는 월 단위로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체납자 명단 역시 서울시설공단의 부과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음.

- 최장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시립묘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용료의 고지 및 징수관리는 어려워질 수 있으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세외수입 관리의 정확성과 시설 운영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설공단과의 협력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또한, 장애인복지과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인 인강원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환수 처분액 10억 2천7백만원이 최초 처분 이후 지속적으로 납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반복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적되고 있음.
- 보조금 환수는 법적 의무이자 행정기관의 제정통제 기능의 핵심임.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 환수가 유예 상태인 것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환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적극적 징수를 통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과년도 체납분(지난년도 수입)의 적극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간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영향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보다 과년도 부과분의 체납액 규모가 약 2.6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일단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난년도 수입으로 이관되고 나면 그 부과 징수가 매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음.¹⁾
- 세외수입의 편성에 있어 세입규모를 추계한 예산액과 회계연도 내 실제여건이 반영된 징수결정액 격차가 최소가 될 경우 예산액 상의 추계가 보다 더 면밀한 것이라 할 것이며,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결국 유용한 세출 재원의 확보로 이어지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단계에서 집행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1) 오나래(2022).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영향 및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다. 국고보조금의 과소(대) 또는 미교부 사례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23년 예산 기준, 전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83.1조원의 69.4%인 57.7조원이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며, 이 중 57.8%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0개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²⁾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교부결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집행되는 구조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규모와 시기를 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과교부 및 미교부가 반복될 경우 세입·세출예산의 정합성이 저해되고, 집행잔액 발생, 이월, 불용 또는 세입결손 등으로 이어져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
- 특히 9월 이후 회계연도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조정 및 연도 내 집행 가능 기간을 현저히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집행기관은 중앙정부의 내시 지연이나 교부액 변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업별 집행추이와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보다 긴밀히 협의하고, 적정 교부 규모와 그 시기를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내시 변경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 사유와 협의 경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동일한 결산상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복지실 25년도 세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의 과교부 및 미교부 사례는 다음 표와 같음.

2) 정홍원 외 (2024).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 기준의 타당성 분석과 재원 분담구조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5년도 복지실 국고보조금 과소 및 미교부 사유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확보)액			차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1,563,440,019	1,061,898,200	501,541,819	1,550,916,719	1,049,374,900	501,541,819	△12,523,300	보건복지부 국비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일부 감액(변경내시)
2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가공후견지원사업운영	501,760	250,880	250,880	484,760	233,880	250,880	△117,000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2025.8.7.)
3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통합돌봄 운영지원	260,000	130,000	130,000	241,500	111,500	130,000	△118,500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25.7.22.)
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능강보	550,038	275,019	275,019	491,495	216,476	275,019	△158,543	3차 사업예산 변경 및 추가선정으로 인해 최종예산 수정
5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동료상담	1,023,630	408,030	615,600	1,018,880	403,280	615,600	△4,750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24.12.16.)

연 번	부 서	사 업 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확보)액			차 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6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장 애 아 가 족 아 동 양 육 지 원	10,441,567	3,132,470	7,309,097	10,256,056	2,946,959	7,309,097	△185,511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2025.9.15.)
7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장 애 수 당 - 기 초	31,988,080	18,808,300	13,179,780	31,618,080	18,438,300	13,179,780	△370,000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25.10.2.)
8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여 성 장 애 인 출 산 비 용 지 원	148,800	74,400	74,400	138,000	63,600	74,400	△10,800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2025.6.10.)
9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장 애 인 주 간 이 용 시 설 기 능 보 강	205,603	42,802	162,801	205,602	42,801	162,801	△1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2024.12.16.)
10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기 능 보 강	1,612,028	806,014	806,014	1,605,841	799,827	806,014	△6,187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2024.12.20.)
11	자 활 지 원 과	근로능력있는 수 급 자 의 탈수급지원	88,220,793	60,150,540	28,070,253	81,895,664	53,825,411	28,070,253	△6,325,129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

연 번	부 서	사 업 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확보)액			차 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12	어 르 신 복 지 과	기 초 연 금 지 급	3,448,413,342	3,109,628,267	338,785,075	3,428,617,374	3,089,832,299	338,785,075	△19,795,968	수급인원 추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감액 변경내 시 통보
13	복 지 정 책 과	의 료 급 여 사 업 운 영	2,002,159,600	1,019,579,800	982,579,800	1,959,647,652	977,067,852	982,579,800	△42,511,948	보건복지부 국비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일부 감액(변경내시)

2 세출 결산 검토

가. 세출결산 총괄 개요

- 복지실 '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조 3,954억 8천 5백만원이며, 이 중 9조 3,39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억원(불용률 0.7%)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복지실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출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25년도 일반회계 집행률은 전년대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복지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2025년도	9,395,485	9,427,269	9,339,407	12,134	5,635	70,093	0.7
2024년도	8,693,859	8,701,140	8,480,426	6,727	15,956	198,031	2.3
2023년도	8,071,163	8,104,571	7,903,730	7,281	8,327	185,233	2.3

- 복지실의 부서별 '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98%를 상회하고 있으며, 돌봄복지과의 경우 9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과는 복지정책과로 전체 예산 2조 8,571억원 가운데 243억 2천 2백만원(집행률 98.2%)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25년도 복지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복지기획관	4,843,661	4,849,892	4,794,469	4,672	5,329	45,424	99.1%
복지정책과	2,857,163	2,857,180	2,832,271	0	587	24,322	98.2%
디딤돌소득과	14,035	14,035	13,319	0	0	716	94.9%
장애인복지과	279,099	280,000	274,747	102	2,828	2,324	98.1%
장애인자립지원과	1,386,348	1,391,317	1,379,162	3,691	1,914	6,551	99.1%
자활지원과	307,016	307,360	294,970	879	0	11,511	96.0%
돌봄고독정책관	4,554,970	4,580,521	4,548,084	7,462	307	24,668	99.3%
어르신복지과	3,918,237	3,918,724	3,888,018	7,462	306	22,937	99.4%
고독대응과	75,971	75,971	75,509	0	0	462	99.4%
돌봄복지과	554,369	579,427	578,260	0	1	1,167	99.8%
1인가구지원과	6,393	6,399	6,297	0	0	103	98.4%

- 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202억 6천9백만원(불용률 1.3%) 발생 한 데에서 기인함.
-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관련하여 '25년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정내시(2024.12.17.) 이후 총 4차³⁾에 거쳐 변경내시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남. 모두 집행상황을 반영한 감액내시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12억원의 감액편성을 하기도 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급은 중앙정부의 교부 결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 규모가 조정되는 구조이므로, 집행기관이 불용 발생을 전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25년도의 경우 4차례의 변경내시가 모두 감

3) 1차 변경내시 (2025.6.25.), 2차 변경내시 (2025.9.11.), 3차 변경내시(2025.10.24.), 4차 변경내시(2025.12.15.)

액내시로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당초 내시규모와 실제 집행수요 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단, 감액추경이 1차례 반영된 이후에도 상당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감액추경 이후에도 예산현액이 실제 집행수요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단순히 중앙정부의 변경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불용을 지양하기 위해, 월별 집행추이와 수급자 변동자료를 바탕으로 감액추경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가 내시 및 실제집행 수요 변동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여 과다편성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하겠음.
- 복지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음. 전년도 특별회계 집행률은 97.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7.8%, 균형발전특별회계 100%)로 나타남.

<표> 2025년도 복지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 잔액 (A-B-C-D)	집행률 (B/A)
복 지 실	2,018,089	2,018,089	1,953,256	0	20,189	44,644	97.8
복지기획관	2,014,944	2,014,944	1,950,111	0	20,189	44,644	97.8
복지정책과	2,014,944	2,014,944	1,950,111	0	20,189	44,644	97.8
돌봄고독정책관	3,146	3,146	3,146	0	0	0	100
돌봄복지과	3,146	3,146	3,146	0	0	0	10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4)에 따라 설치된 급여기금으로,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세입, 세출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동 조례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드는 비용,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5)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1조6)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동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①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③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원 ④ 지방채 및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⑤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되어 있음.

-
- 4) 「의료급여법」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6)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이 수립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표> 복지실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2025년도	2,018,089	2,018,089	1,953,256	0	20,189	44,644	2.2
2024년도	1,806,293	1,806,293	1,784,912	0	84	21,297	1.2
2023년도	1,930,801	1,930,801	1,596,818	0	0	333,983	20.9

나. 예산의 변경사용

1) '25 회계연도 예산의 변경(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 예산변경은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신축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방재정법 제47조7)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임.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의 변경, 동일 단위사업 내 목간의 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의 결정으로 사용하는 것임.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의 변경으로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

7)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을 때 시행하게 됨.

- 복지실 '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025년도 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이용	전용	변경	이체
건수	-	26건	39건	16건
승인금액	-	1,818	14,451	229,667

<표> 2025년도 복지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	전용	변경	이체
건수	-	-	1건	-
승인금액	-	-	1,000	-

- 일반회계의 예산전용은 총 26건(18억 1천8백만원), 예산변경은 총 39건(144억 5천1백만원), 이체는 총 16건(2,296억원)으로 나타남.
- 특별회계의 예산변경은 총 1건(10억원) 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의 이체 사유는 '25년 1월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과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하던 요양보호 관련 업무를 돌봄복지과로 이관하면서 발생한 것임.
-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이 연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연령에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는 점, 돌봄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와 요양업무의 연계 등을 고려해 실시된 조직개편임.

가)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의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25년도 복지실의 예산 전용 건수와 금액은 총 26건, 18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년도 총 33건, 17억 3천 8백만원)

<표> 2025년도 복지실 예산 전용내역

(단위: 천원)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 상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	복지과	서울시복지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73,834,393	300,000	-	2025-12-17	73,178,278	99.5%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전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21,046,340	-	300,000		21,174,656	99.2%	
2	복지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684,422	18,491	-	2025-12-23	2,012,395	75.5%	의료급여관리사지원사업 확정내시 증가분 및 성과포상금 국비 추가 교부에 대한 시비매칭을 위한 전용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368,801	-	18,491		3,273,422	98.3%	
3	복지과	서울시복지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73,934,393	100,000	-	2025-03-19	73,178,278	99.5%	사회복지사 교육 수행기관 변경(서울시복지재단 → 사회복지협의회)으로 인한 전용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93,554	-	100,000		423,554	100.0%	
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9,754,373	3,000	-	2025-12-23	9,548,108	98%	구로구 장애인지원주택 커뮤니티실 1호 추가 공급 관련 보증금 지출 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2,000	-	3,000		15,000	100%	
5	장애인복지과	퇴소장애인 자립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56,800	43,200	-	2025-09-25	59,572	52%	신규 자립생활주택(1호) 확보로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납부를 위한 전용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 상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장애인 자립생활 주 생택영 운	406-01 기타자본이전	28,000	-	43,200		68,168	96%	
6	장애인 복 지 과	장애인 거주시 설 자립 생 활 강 화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3,138,182	30,000	-	2025-11-18	2,969,385	9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인 건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전용
		장애인단기거 주 시 설 운 영	307-05 민간위탁금	1,001,237	-	30,000		1,039,273	99%	
7	장애인 복 지 과	장애인 거주시 설 자립 생 활 강 화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3,268,182	130,000	-	2025-11-17	2,969,385	9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인 건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전용
		장애인단기거 주 시 설 운 영	307-10 사회복지시 설 법정운영비보 조	20,608,517	-	130,000		20,812,175	99%	
8	장애인 복 지 과	서울시보조기 기 센 터 운 영	402-03 민간위탁 사업비	654,000	28,400	-	2025-07-01	625,600	100%	발달장애인 정책정보 배 포 업무수행기관 변경 (보조기기센터 → 의사 소통권리증진센터)으로 인한 전용
		서울시장애포 의사소통권리 증진 센터 운 영	307-05 민간위탁금	410,301	-	28,400		438,701	100.0%	
9	장애인 자 립 지 원 과	중증장애인 동 료 상 담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1,020,030	45,000	-	2025-06-30	884,614	90.7%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 센 터 및 커리어플러스센터 의 통합 운영 효과성 분석 을 위한 용역 수행을 위해 전용
		장애인일자리 통 합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	-	45,000		44,100	98.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 상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센 터 운 영								
10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장 애 인 생 활 이 동 지원 센터 운 영 지 원	307-11 사회 복지 사업 보조	15,306,097	54,200	-	2025-11-21	15,233,657	100.0%	장 애 인 수 어 통 역 센 터 인 건 비 부 족 분 확 보 를 위 해 전 용
		장 애 인 수 어 통 역 센 터 영	307-10 사 회 복 지 시 설 법 정 운 영 비 보 조	1,419,461	-	54,200		1,473,661	100.0%	
11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장 애 인 생 활 이 동 지원 센터 운 영 지 원	307-11 사회 복지 사업 보조	15,251,897	18,240	-	2025-11-21	15,233,657	100.0%	장 애 인 수 어 통 역 센 터 인 건 비 부 족 분 확 보 를위 해 전 용
		장 애 인 수 어 통 역 센 터 영	308-01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6,540,232	-	18,240		6,558,472	100.0%	
12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장 애 인 편 의 증 진 기 술 지 원 센터 운 영	307-11 사 회 복 지 사업 보조	611,661	44,000	-	2025-03-19	567,661	100.0%	장 애 인 편 의 증 진 기 술 지 원 센 터 노 후 집 기 류 교 체 를 위 한 전 용
		장 애 인 편 의 증 진 기 술 지 원 센터 운 영	402-01 민 간 자 본 사업 보조 (자 체 재 원)	-	-	44,000		44,000	100.0%	
13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장 애 인 복 지 관 능 보 강	402-03 민 간 위 탁 사업 비	1,245,099	2,227	-	2025-04-11	1,242,872	100.0%	서 울 시 장 애 인 편 의 증 진 기 술 지 원 센 터 리 모 델 링 공 사 설 계 변 경 으 로 전 용
		장 애 인 편 의 증 진 기 술 지 원 센터 운 영	401-01 시 설 비	-	-	2,227		808,013	99.6%	
14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장 애 인 복 지 관 능 보 강	403-01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551,693	34,326	-	2025-04-11	517,367	100.0%	서 울 시 장 애 인 편 의 증 진 기 술 지 원 센 터 리 모 델 링 공 사 설 계 변 경 으 로 전 용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 상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장애인편의증 진 기 술 지원 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2,227	-	34,326		808,013	99.6%	
15	자 지 원 과	쪽방거주자 생 활안정지원(쪽 방상담소 운영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180,200	25,000	-	2025-11-11	155,010	100%	해든센터 SH 관리위수 탁 수수료 집행을 위해 전용
		쪽방거주자 생 활안정지원(쪽 방상담소 운영 지 원)	308-13 공기관등에대 한경상적위탁 사업비	30,000	-	25,000		115,585	86%	
16	자 지 원 과	노숙인 등 의 료 지 원	307-05 민간위탁금	1,202,178	17,660	-	2025-09-23	1,143,091	97%	영등포 쪽방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영등포 보 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 원 현장 진료 공간 마련 을 위해 전용
		노숙인 등 의 료 지 원	402-03 민간위탁 사업비	-	-	17,660		17,660	100%	
17	어 르 신 복 과 지	서울 밥 상 영 운	201-01 사무관리비	1,727,435	57,454	-	2025-10-20	822,802	57%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 강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등을 위해 전용
		어 르 신 복 과 지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458,233	-	57,454		515,675	100%	
18	어 르 신 복 과 지	서울 밥 상 영 운	201-01 사무관리비	1,654,981	216,217	-	2025-10-21	822,802	57%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 강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등을 위해 전용
		어 르 신 복 과 지	402-03 민간위탁 사업비	1,211,584	-	216,217		1,427,801	100%	
19	어 르 신 복 과 지	서울 밥 상 영 운	201-01 사무관리비	1,827,069	99,634	-	2025-10-20	822,802	57%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 강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등을 위해 전용
		어 르 신 복 과 지	402-02 민간자본	248,862	-	99,634		348,496	10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 상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기 능 보 강	사업보조 (이전재원)							
20	어르신 복과 지	서울 밥 상영	201-01 사무관리비	2,077,069	250,000	-	2025-10-20	822,802	57%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4기 증설에 따른 유지보수·정비 및 조각공원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위한 전용
		시설 장 사 시 설 위 탁 운	308-13 공기관등에대 한경상적위탁 사업비	33,647,559	-	250,000		33,897,559	100%	
21	어르신 복과 지	서울 밥 상영	201-01 사무관리비	1,669,981	15,000	-	2025-10-21	822,802	57%	장사시설 화장로 신규 산분장지 조성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전용
		시설 장 사 시 설 화 장 로 수 유 지 보	403-02 공기관등에대 한자본적위탁 사업비	11,619,100	-	15,000		11,634,100	100%	
22	어르신 복과 지	서울 밥 상영	201-01 사무관리비	2,261,860	6,500	-	2025-07-10	822,802	57%	탐골공원 어르신 폭염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전용
		노인 중 합 복 지 관 운 영	402-03 민간위탁 사업비	57,000	-	6,500		63,500	100%	
23	어르신 복과 지	서울 밥 상영	201-01 사무관리비	2,255,360	178,291	-	2025-07-10	822,802	57%	탐골공원 어르신 폭염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전용
		노인 중 합 복 지 관 운 영	307-05 민간위탁금	36,754,624	-	178,291		36,778,808	100%	
24	돌봄 지 복 과	어르신돌봄중 사 자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530,570	74,331	-	2025-12-12	450,969	99%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한 전용
		노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담	301-01 사회보장적수 혜금(국고보조 재원)	243,287,779	-	74,331		247,199,832	10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 상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25	돌 보 지 보 과	어르신의료복 지 시 설 운 영 (요 양)	201-01 사무관리비	6,400	1,100	-	2025-12-12	4,700	89%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 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한 전용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담 분 금	301-01 사회보장적수 혜금(국고보조 재원)	243,228,046	-	1,100		247,199,832	100%	
26	돌 보 지 보 과	어르신돌봄중 사 자 지 원	4 0 2 - 0 3 민 간 위 탁 사 업 비	160,000	25,610	-	2025-12-12	134,390	100%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 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한 전용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담 분 금	3 0 1 - 0 1 사회보장적수 혜금(국고보조 재 원)	243,398,378	-	25,610		247,199,832	100%	

- 그러나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업에 160,000천원, 장애인수어통역 센터 운영에 72,400천원의 전용을 통해 인건비의 부족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부족분을 전용을 통해 충당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필수경비에 대한 당초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인건비는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이자 비교적 예측 가능성이 높은 지출 항목으로, 반복적인 부족분 발생은 예산의 과소편성 및 전용 등을 통한 추후 예산 확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장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사업 수행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인력운영계획과 인건비 산출기초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을 통한 충당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나) 예산의 변경

- 예산변경사용은 지방재정법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으나,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복지실 '25년도 예산변경사용은 총 40건, 144억 5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총 19건, 20억 3천8백만원)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의 변경사용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나, 그 규모가 전년도 대비 현저히 확대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 집행 가능성 및 소요액 산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임.

<표> 2025년도 복지실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	복지과	보훈대상자 등 지 원	301-02 사회보장적수 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04,656,500	3,000,000	-	2025-11-20	99,627,615	98.2%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 급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변경
		서울형 기초보 장 제 도 운 영	301-02 사회보장적수 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8,046,340	-	3,000,000		21,174,656	99.2%	
2	복지과	보훈대상자 등 지 원	301-02 사회보장적수 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01,656,500	160,000	-	2025-12-16	99,627,615	98.2%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훈대 상자 증가로 인해 저소득 국민 부가급여 예산부 족에 따른 변경
		저소득국민 부 가 급 여 지 원	301-02 사회보장적수 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2,234,760	-	160,000		32,312,492	99.7%	
3	복지과	사회보장 정책 개발 및 사업 지 원	202-03 국 외업무 여비	55,000	5,965	-	2025-11-20	27,357	55.8%	기피부서 지정에 따른 수 당 지급 대상 증가로, 예 산 부족으로 변경
		사회보장 정책 개발 및 사업 지 원	204-02 특 정업무 경비	135,600	-	5,965		141,531	10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 주택 운영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9,764,373	10,000	-	2025-12-03	9,548,126	97.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인건비 부족분 보충을 위한 변경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운영	307-05 민 간위탁금	1,031,237	-	10,000		1,039,273	99.8%	
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 주택 운영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9,974,373	210,000	-	2025-12-03	9,548,126	97.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인건비 부족분 보충을 위한 변경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20,738,517	-	210,000		20,812,175	99.3%	
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307-10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3,985,925	1,690,000	-	2025-11-17	12,251,977	99.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변경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09,317,066	-	1,690,000		109,781,697	98.2%	
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 시설 자립 생활 강화	307-10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459,878	140,000	-	2025-11-17	316,035	98.8%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변경
		장애인거주	307-10 사회	109,177,066	-	140,000		109,781,697	98.2%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시 설 운 영	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8	장애인복지과	장 애 인 공 동 생 활 가 정 운 영	307-11 사 회복지 사업보조	1,627,218	270,000	-	2025-11-17	1,351,411	99.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 조금 부족으로 인한 변 경
		장 애 인 거 주 시 설 운 영	307-10 사 회 복 지 시 설 법 정 운 영 비 보조	111,007,066	-	270,000		109,781,697	98.2%	
9	장애인복지과	장 애 인 거 주 시 설 운 영	307-05 민 간위탁금	6,899,026	82,811	-	2025-10-21	6,319,714	92.7%	보조기기센터의 사회복지시 설 전환에 따라 인건비 증 액에 따른 변경
		서 울 시 보 조 기 기 센 터 운 영	307-05 민 간위탁금	1,454,171	-	82,811		1,521,800	99.0%	
10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공 공후견지원 사 업 운 영	307-05 민 간위탁금	501,760	11,150	-	2025-10-15	467,760	95.3%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 업 운영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 보를 위한 변경
		발달장애인 긴 급 돌 봄 사 업 운 영	307-11 사 회복지 사업보조	542,750	-	11,150		553,900	100.0%	
1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개인예 산제 시범도입	301-02 사 회보장적수혜 금(취약계층, 지방재원)	240,000	58,000	-	2025-12-11	182,000	100.0%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 품 구입비 지원 4분기 지 원금 부족분에 따른 변경
		중증장애인 맞 춤 형 지 원	301-02 사 회보장적수혜	800,000	-	58,000		825,701	96.2%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2	장애인복지과	서울시보조 기기센터 운영	402-03 민 간위탁 사업비	625,600	171,600	-	2025-07-01	454,000	100.0%	발달장애인 정책정보 업무수 행기관 변경 (보조기기센터 →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서울시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센터 운영	402-03 민 간위탁 사업비	-	-	171,600		171,600	100.0%	
1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307-05 민 간위탁금	7,003,566	104,540	-	2025-05-13	6,319,714	92.7%	보건복지부 장애인개인예 산제 운영 국고보조금 증 액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를 위한 변경
		장애인개인 예산제 운영	308-01 자 치단체 경상보조금	192,960	-	104,540		297,500	100.0%	
14	장애인자 립지원과	장애아가족 아 동 양육 지원	307-11 사 회복지 사업보조	10,441,567	360,000	-	2025-11-06	7,831,170	82.9%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국고보조금 증액내시 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를 위한 변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308-01 자 치단체 경상보조금	29,214,240	-	360,000		28,740,000	97.2%	
15	장애인자 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403-01 자 치단체 자본보조	557,500	140,000	-	2025-04-11	410,000	98.2%	장애인복지관 스마트발달트 레이닝 등 프로그램 비용 증액에 따른 변경
		장애인복지관 운영	402-03 민 간위탁 사업비	60,000	-	140,000		200,000	10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6	장애인자 립 지 원 과	장애아가족 아 동 양 육 지 원	307-11 사 회복지 사업보조	9,966,671	88,202	-	2025-12-04	7,831,170	82.9%	장애수당(차상위등) 국고보 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매 청시비 확보를 위한 변경
		장 애 수 당 - 차 상 위 등	301-01 사 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 재원)	11,258,891	-	88,202		11,473,085	100.0%	
17	장애인자 립 지 원 과	장 애 인 주 간 이 용 시 설 영	307-10 사 회 복지 시 설 법 정 운영 비보조	36,272,345	1,500,000	-	2025-12-03	34,706,558	99.8%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증 액내시에 따른 매청시비 확보를 위한 변경
		중 증 장 애 인 연 금	301-01 사 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 재원)	165,734,717	-	1,500,000		169,553,673	100.0%	
18	장애인자 립 지 원 과	장애아가족 아 동 양 육 지 원	307-11 사 회복지 사업보조	10,081,567	114,896	0	2025-12-03	7,831,170	82.9%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증 액내시에 따른 매청시비 확보를 위한 변경
		중 증 장 애 인 연 금	301-01 사 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 재원)	167,234,717	0	114,896		169,553,673	100.0%	
19	장애인자 립 지 원 과	장애아가족 아 동 양 육 지 원	307-11 사 회복지 사업보조	9,878,469	427,100	0	2025-12-04	7,831,170	82.9%	중증장애인연금 및 장애아 동수당 수급대상자 증가로 인한 서울형장애인부가급여 재원 부족 에 따른 변경
		서울형 장애인	301-02	14,880,000	0	427,100		15,204,233	99.3%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부 가 급 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20	자 활 지 원 과	쪽방거주자 생 활안정지원(쪽 방상담소 운영 지 원)	307-05 민 간위탁금	8,672,616	80,000	-	2025-11-11	8,665,233	100.0%	해든센터 SH 관리위수탁 수수료 등을 위한 변경
		쪽방거주자 생 활안정지원(쪽 방상담소 운영 지 원)	308-13 공 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 업비	55,000	-	80,000		115,585	85.6%	
21	자 활 지 원 과	쪽방거주자 생 활안정지원(쪽 방상담소 운영 지 원)	406-01 기 타자본 이전	30,000	10,000	-	2025-10-31	20,000	100.0%	돈의동 온기창고 및 자활작 업장 조성 공사 자재비 인 상으로 예산 변경
		쪽방거주자 생 활안정지원(쪽 방상담소 운영 지 원)	401-02 감 리비	-	-	10,000		-	0.0%	
22	자 활 지 원 과	쪽방거주자 생 활안정지원(쪽 방상담소 운영 지 원)	406-01 기 타자본 이전	150,000	120,000	-	2025-10-31	20,000	100.0%	돈의동 온기창고 및 자활작 업장 조성 공사 자재비 인 상으로 예산 변경
		쪽방거주자 생 활안정지원(쪽 방상담소 운영 지 원)	401-01 시 설비	200,000	-	120,000		143,621	21.6%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지 원)								
23	자활지원 과	쪽방거주자 생 활안정지원(쪽 방상담소 운영 지 원)	406-01 기 타자본 이전	300,000	150,000	-	2025-03-19	20,000	100.0%	영등포 온기창고 공사 자 재비 인상으로 예산 변경
		쪽방거주자 생 활안정지원(쪽 방상담소 운영 지 원)	402-03 민 간위탁 사업비	-	-	150,000		392,943	98.2%	
24	자 활 지 원 과	노숙인 자활시 설 운 영	307-11 사 회복지 사업보조	7,355,182	21,000	-	2025-10-17	7,292,830	99.4%	노숙인 자활시설 인건비, 관리운영비 부족으로 변경
		노숙인 자활시 설 운 영	307-05 민 간위탁금	2,598,421	-	21,000		2,619,387	100.0%	
25	자 활 지 원 과	자활근로사업 지 원	308-01 자 치단체 경상보조금	132,708,931	52,140	-	2025-11-06	132,656,791	100.0%	지역자활센터 운영 국고보 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매 청시비 확보를 위해 변경
		지역자활센터 운 영 지 원	308-01 자 치단체 경상보조금	12,928,259	-	52,140		13,084,680	100.0%	
26	자 활 지 원 과	노 숙 인 등 자 활 작 업 장 조 성	402-03 민 간위탁 사업비	600,000	400,000	-	2025-10-31	200,000	100.0%	돈의동 온기창고 및 자활작 업장 조성 공사 자재비 인 상으로 예산 변경
		노 숙 인 등 자 활 작 업 장 조 성	401-01 시 설비	-	-	400,000		-	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27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8,743,500	8,134	-	2025-12-03	8,726,277	100%	긴급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지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2-03 민간위탁 사업비	853,447	-	8,134		861,581	100%	
28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시직숙)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13,663,504	1,000	-	2025-10-24	13,266,204	97%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를 위한 변경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304,000	-	1,000		306,000	100%	
29	어르신복지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0,723,330	43,321	-	2025-07-16	40,610,352	100%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 변경에 따른 시비 지원금액 증가로 인한 변경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114,657	-	43,321		5,157,978	100%	
30	고독대응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시비)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394,370	9,700	-	2025-12-02	4,311,041	98.3%	노인맞춤돌봄사업 광역지원기관 운영 사업에서 IoT 기반 스마트 돌봄·관제실증 및 특화사업 확대에 의한 예산 증가에 따른 변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326,985	-	9,700		336,685	100.0%	
31	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2,014,689	22,000	-	2025-12-11	1,980,250	99.4%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비 증가에 따른 변경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02-03 민간위탁 사업비	1,238,391	-	22,000		1,260,391	100.0%	
32	돌봄복지과	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662,273	36,268	-	2025-12-12	3,626,004	100.0%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 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한 변경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분담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 재원)	243,362,110	-	36,268		243,398,378	100.0%	
33	돌봄복지과	어르신의료복 지시설운영 (요양)	307-05 민간위탁금	2,755,034	58,472	-	2025-12-12	2,692,786	99.9%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 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한 변경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분담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 재원)	243,229,146	-	58,472		243,287,618	100.0%	
34	돌봄복지과	서울형 좋은돌 봄인증제 운영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18,597,900	844	-	2025-12-13	18,434,946	99.1%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 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한 변경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분담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 재원)	243,461,988	-	844		243,462,832	100.0%	
35	돌봄복지과	서울형 좋은돌 봄인증제 운영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22,928,900	4,331,000	-	2025-11-28	18,434,946	99.1%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 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한 변경
		노인장기요양	301-01 사	217,425,399	-	4,331,000		221,756,399	10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 재원)							
36	돌봄 복지과	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	308-01 자 치단체 경상보조금	1,300,000	151,000	-	2025-11-28	1,111,000	100.0%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 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한 변경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분담금	301-01 사 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 재원)	221,756,399	-	151,000		221,907,399	100.0%	
37	돌봄 복지과	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	308-01 자 치단체경상보 조금	1,149,000	38,000	-	2025-12-12	1,111,000	100.0%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 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한 변경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분담금	301-01 사 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 재원)	243,423,988	-	38,000		243,461,988	100.0%	
38	돌봄 복지과	어르신의료 복지시설 운영(요양)	308-01 자 치단체 경상보조금	2,047,482	161	-	2025-12-12	2,047,321	100.0%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 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한 변경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분담금	301-01 사 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 재원)	243,287,618	-	161		243,287,779	10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39	돌봄 복지과	어르신의료복지 시설 운영 (요양)	308-01 자 치단체 경상보조금	2,421,482	374,000	-	2025-11-28	2,047,321	100.0%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 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한 변경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 시행 분담금	301-01 사 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 재원)	217,051,399	-	374,000		217,425,399	100.0%	
40	복지 정책과	의료급여사업 운영	308-13 공 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 업비	1,977,437,800	1,000,000	-	2025-07-24	1,911,716,905	97.7%	의료급여운영 자치구 사업 지원비(보조기기 구입비 등) 부족으로 변경
		의료급여사업 운영	308-01 자 치단체 경상보조금	21,097,800	-	1,000,000		217,425,399	99.9%	

- 변경대상 사업 가운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은 연도말(11월)에 30억원의 전용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25년도 해당 사업의 최종예산액은 181억원으로 변경액 30억원은 예산의 약 16%에 달하는 금액임. 변경 시기와 변경액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해당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타 지역대비 주거비, 생활비 등 물가가 높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음. 사업 신청 과정에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신청을 받은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가구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규모의 변동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특히, 해당 사업의 과거 집행실적을 보면 '23년과 '25년은 연말에 예산 부족현상으로 인해 예산변경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했고, '24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본예산 편성시 반복적으로 대상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나타남. 이는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최근 3년 결산 및 집행 현황

(2026년 03월 31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3	(x-) 17,732,249	(x-) 0	(x-) 900,000	(x-) 18,632,249	(x-) 18,201,122	(x-) 0	(x-) 431,127
2024	(x-) 17,815,870	(x-) 0	(x-) 0	(x-) 17,815,870	(x-) 16,395,932	(x-) 0	(x-) 1,419,938
2025	(x-) 18,151,316	(x-) 0	(x-) 3,300,000	(x-) 21,451,316	(x-) 21,279,572	(x-) 0	(x-) 171,744
2026	(x-) 21,848,376	(x-) 0	(x-) 0	(x-) 21,848,376	(x-) 6,679,136	(x-) 0	(x-) 15,169,240

- 예산의 변경사용은 의회에 내역을 제출해야하는 전용과는 다르게 부서장의 책임하에 운용할 수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당시 확인한 사업별 자원 배분과 실제 집행 간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변경사용 사유와 발생 원인을 사업별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다) 예산 이월사업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⁸⁾에서 명시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정한 재정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이월제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나눌 수 있으며 명시이월의 경우 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됨.
- 사고이월은 사업 집행을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또는 발주)를 한 후 연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차년도로 넘겨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이 당해 연도에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8)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복지실 25년도 사고이월은 총 12건, 51억 9천6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5년도 복지실 사고이월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 도 이월액	이월사유
1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도입	201-0 1 사무관 리비	263,240	260,602	158,837	101,765	대상자 모집, 지원 심의, 사업평가 등 절차 이행이 '26.3월 까지 예정되어 있어 이월하여 집행 (※ 시범사업 용역기간 : '25.5.~'26.3., 94,490천원 / 성과평가 용역기간 : '25.7.~'26.3., 7,275천원)
2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401-0 1 시설비	154,000	152,807	132,000	20,807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제3종시설물 실태조 사 시행계획 수립 후 안전 점검 시행 연장에 따라 이월
3	장애인 체육시설 기능보강	401-0 1 시설비	22,000	21,275	0	21,275	'26년 정기 및 정밀 안전 점검 시행 연 장에 따라 이월
4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401-0 1 시설비	7,100,000	7,087,957	3,544,568	3,543,389	문화재조사, 지열공사, 현장여건 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
5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401-0 2 감리비	1,225,000	1,225,000	1,171,591	27,000	문화재조사, 지열공사, 현장여건 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
6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401-0 3 시설부 대비	30,232	11,984	11,984	13,600	문화재조사, 지열공사, 현장여건 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
7	시립서대문 동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401-0 1 시설비	200,000	64,461	0	64,461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대, 효율적 시설여건 운영 조성 등 을 위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연장 이월

연 번	세부사업	통계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 도 이월액	이월사유
8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 원(쪽방상 담소 운영 지원)	401-0 1 시설비	665,000	478,175	143,621	334,554	돈의동 주민공동 이 용시설 임시창고·사 무소 조성공사 준공기 한이 '26. 7월로 예정되 어 있어 이월 추진
9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 원(쪽방상 담소 운영 지원)	401-0 2 감리비	10,000	7,600	0	7,600	돈의동 주민공동 이 용시설 임시창고·사 무소 조성공사 감리용 역 준공기한이 '26. 7 월로 예정되어 있어 이월 추진
10	노숙인 등 자활 작업장 조성	401-0 1 시설비	400,000	387,321	0	387,321	돈의동 주민공동 이 용시설 임시창고·사 무소 조성공사 준공기 한이 '26. 7월로 예정되 어 있어 이월 추진
11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401-0 1 시설비	7,170,048	413,918	216,868	197,050	액티브시니어 복합 여 가문화시설 기본 구상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6.9.21.)하여 당 해 연도내 지출 완료 하지 못할 것으로 예 측되는 용역비 사고 이월
12	서울밥상 운영	201-0 1 사무관 리비	1,438,764	1,146,492	822,802	477,614	끊김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기간을 '26년 2월까지로 설정 하여 '26년 1~2월 용 역비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대부분 용역 및 시설공사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발생함. '25년도 복지실의 사고이월 총 12건 중 9건은 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사기간, 사전절차, 현장 여건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반다비체육센터 사업은 2020년 6월 건립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공사추진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와의 협조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할 필요가 있음.

<표> 최근3년 반다비체육센터 걸립 사고이월 내역

(단위: 천원)

연도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이월사유
2025년	401-01 시설비	7,100,000	7,087,957	3,544,568	3,543,389	문화재조사, 지열공사, 현장여건 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
	401-02 감리비	1,225,000	1,225,000	1,171,591	27,000	문화재조사, 지열공사, 현장여건 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
	401-03 시설부 대비	30,232	11,984	11,984	13,600	문화재조사, 지열공사, 현장여건 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
2024년	401-01 시설비	3,345,000	3,345,000	236,000	3,109,000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당해 연도내 지출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이월하여 집행 예정(※ 공사기간 : '24.11. ~ '26.11.)
	401-02 감리비	513,000	513,000	-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당해 연도내 지출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이월하여 집행 예정(※ 공사기간 : '24.11. ~ '26.11.)
	401-03 시설부 대비	31,334	16,102	16,102	15,232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당해 연도내 지출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이월하여 집행 예정(※ 공사기간 : '24.11. ~ '26.11.)
2023년	401-01 시설비	1,990,000	1,310,890	1,074,890	236,000	용역 과업기간 연장, 계약변경에 따라 2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 예정
	401-03 시설부대 비	30,000	17,866	17,866	11,334	사고이월 대상인 설계용역 관련 경제성 검토비로 2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 예정

라) 예산 불용사업

-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됨.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이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인한 불용액 발생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도 일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자치구 및 타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신규기관 미선정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적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집행기관에서는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복지실 '25년도 사업 가운데 20% 이상 불용사업은 총 7개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실 2025년도 20%이상 불용사업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1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2,684,422	2,684,422	2,665,931	653,536	24.5%
2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복지상 시상	35,10	35,100	35,100	7,855	22.4%
3	장애통합지원과	퇴소장애인 자립지원	833,400	833,400	790,200	234,039	29.6%

연 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 예산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률
4	장 부 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50,038	550,038	550,038	117,086	21.3%
5	장 자 지 원 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78,140	178,140	178,140	92,395	51.9%
6	장 자 지 원 과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0	0	200,000	135,540	67.8%
7	장 자 지 원 과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0	0	225,169	113,504	50.4%

다. 예비비 사용

- 예비비 제도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3조⁹⁾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5 회계연도 복지실에서는 총 2건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9)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복지실 2025년도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예비비지출유사	
	조	직	세부사업				
1	돌	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21,320,647	21,320,647	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부담금부족분납부를위해 예비비 사용
2	돌	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737,000	3,737,000	

라. 세부사업별 검토

1)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출연금에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해 편성되는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됨. 서울시복지재단의 최근 3년간 출연금은 다음과 같음.

<표> 최근 3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최종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2023	76,022,567	76,022,567	73,267,352	96%	2,755,215
2024	72,143,520	72,133,520	71,033,520	98%	1,100,000
2025	73,934,393	73,534,393	73,178,278	99%	356,115

- 서울시복지재단 예산은 일반 연구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와 서울꿈나래 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자산형성을 통한 대상자 직접 지급사업 등으로 구성된 기금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결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최근 3년 서울시복지재단 사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최종예산		실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기금회계	일반회계	기금회계
2023	33,908,147	48,537,611	30,396,028 (90%)	42,124,349 (87%)
2024	35,183,842	47,294,730	30,184,907 (86%)	40,984,749 (87%)
2025	35,553,961	52,045,308	32,153,526 (90%)	45,360,786 (87%)

※ 집행액 중 반환금 및 이월액은 제외함

○ '25년도 복지재단 일반사업 중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아래와 같음.

<표> 서울시복지재단 '25년도 집행률 90%미만 사업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1	디딤돌소득 정합성 보완사항 추가 연구	52,948	25,203	27,745	48%
2	서울시 어르신복지종합계획 수립 연구	50,268	29,690	20,578	59%
3	서울시 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개선방안 연구	16,319	13,873	2,446	85%
4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질적 연구(1·2단계)	56,390	49,374	7,016	88%
5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조달방안 연구	54,870	48,047	6,823	88%
6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지원방안 연구	52,819	43,782	9,037	83%
7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지표 개발 연구	39,672	30,423	9,249	77%
8	통합데이터 관리체계 개발	105,000	90,100	14,900	86%
9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	483,876	405,688	78,188	84%
10	장애인주거서비스사업 품질관리지원	33,486	28,618	4,868	86%
11	가족돌봄청년 지원	354,946	310,639	44,307	88%
12	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 및 자원연계	57,894	50,633	7,261	88%
13	은둔·거부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170,542	132,809	37,733	78%
14	고립가구 지원인력 활동 및 역량강화	67,506	59,349	8,157	88%
15	공익소송지원	34,000	28,929	5,071	85%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16	청년 금융역량강화	179,880	156,884	22,996	87%
17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	435,461	386,276	49,185	89%
18	예비비	1,997,244	-	1,997,244	0%
19	서울꿈나래통장	1,191,260	991,670	199,590	83%
20	희망두배청년통장	46,307,400	41,217,150	5,090,250	89%
21	가금관리위원회 운영지원	3,060	700	2,360	23%

- 예비비를 제외한 90%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 20건 가운데 7건이 연구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디딤돌소득 정합성 보완사항 추가연구’는 집행률이 5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그 사유를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연구진 축소로 밝히고 있음.
- 해당 연구의 예산은 52,948천원으로 당초 8명의 공동연구원 수당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1명으로 수정되어 해당 금액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연구는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디딤돌소득(안심소득)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자체 유형별로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적절한 실행모델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됨.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디딤돌소득사업은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모형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향후 제도화 또는 타 지자체로의 확산 여부는 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충분한 검증이 수반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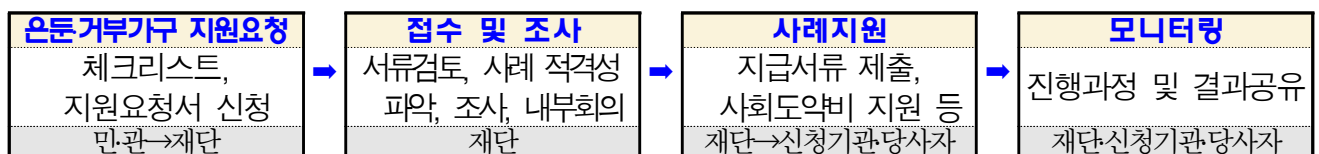
- 그러나, 당초 공동연구원 8명으로 계획되었던 연구진이 1명(책임연구원 1명 포함 총 2명)으로 축소된 것은 연구과제의 성격과 범위에 비추어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당초 계획의 절반을 넘는 연구 인원이 축소된 것인데, 이는 당초 연구계획이 적정했는지와 함께 연구진의 축소가 분석의 범위와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집행기관은 연구진의 축소사유와 이에 따른 과업 수행계획의 조정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결과는 비공개로 관리되는 만큼 연구 수행체계 변경이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 어르신복지종합계획 수립 연구’ 역시 다수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당초 위촉연구원을 8개월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채용된 위촉연구원이 3개월만에 퇴사하면서 인건비에서 상당한 불용이 발생함.
- 연구인력의 중도퇴사는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당초 연구계획이 8개월간의 연구인력 투입을 전제로 수립되었다면, 해당 인력의 조기 이탈이후 대체 인력 채용여부, 연구수행방식의 조정여부, 연구 일정 및 과업 수행에 미친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위촉연구원의 실제 근무기간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당초 일정대로 완료되었다면, 당초 인력 투입계획이 과다산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타 연구진에게 과업이 집중되었거나 연구의 범위 등이 조정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함.
-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촉연구원의 중도퇴사 이후 대체인력 채용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 연구수행계획 및 과업일정 조정여부, 연구성과에 미친 영향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복지재단의 다수의 연구사업에서 위촉연구원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위촉연구원의 중도퇴사나 채용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구의 연속성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향후 재단에서는 위촉연구원의 처우, 근무조건, 계약기간 및 연구범위의 적정성 등 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연구인력 이탈 시 대체인력 확보 또는 연구일정, 과업범위 조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은둔·거부가구 맞춤형 지원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고립 은둔·거부가구를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을 중심으로 현장중심 발굴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된 사업임. 해당사업은 3종 복지관, 민간단체 등 중 참여기관을 10개소를 선정해 지역내 은둔·거부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주를 이룸.
- 그러나 해당 사업의 당초예산 195,542천원 가운데 10,000천원으로 편성된 은둔·거부 당사자 지원(사회도약지원) 사업의 예산과목 및 집행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해당 사업은 은둔·거부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은 후, 체크리스트 및 지원요청서 등을 토대로 적격성을 검토해 당사자의 계좌로 1회 5만원씩 연 20만원 한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다만, 해당지원금은 일반운영비의 회의참석수당 형식으로 집행됨.
- 사업 추진 결과 총 57명에게 157회 지원을 실시해, 7,850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지원금의 지급 요건이 실제 회의 참석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보이고 있어, 이를 회의참석수당으로 집행한 것의 사업의 실질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표> 재단 은둔·거부 당사자지원(사회도약 지원)사업 프로세스



- 회의참석수당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참석대상, 지급기준 등이 명확해야함. 단순히 수당 지급 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회의의 실질적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 목적이 회의 참석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액 지원 또는 참여 유도에 가까운 경우에는 회의 운영비의 성격과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해당 사업은 은둔·거부 당사자의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이 일반적인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사업지원 대상자라는 점에서 지급의 목적이 회의 참석에 대한 보상인지,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액 지원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집행기관은 해당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향후 사업 목적과 지급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과목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해당사업은 시설거주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장기간 주거서비스 제공, 거주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재활서비스(상담, 치료, 사회적응훈련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5년 기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41개소이며, 이용자는 1,861명, 종사자는 1,686명으로 나타남¹⁰⁾. '25년 당초예산은 116,212백만원(국비 49,733백만원, 시비 66,479백만원)으로 편성됨.
- 집행기관에서는 '25년 11월 예산 변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항목 2,100,000천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남.

<표> 장애인거주시설 세부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현액	예산액		승인후 예산현액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109,177,066	2,100,000		111,277,066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13,985,925		1,690,000	12,295,925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1,627,218		270,000	1,357,218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강화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459,878		140,000	319,878

10) 미지원시설 4개소를 포함하면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은 45개소이며 총 이용자는 1,929명, 종사자는 1,718명임.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4.12.19.)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변경됨.
- 이에 따라, 복지실에서는 '25년 5월 종전 기본급, 정액급식비, 조정수당으로 구성되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남.
-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법정수당 및 이에 연동되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됨. 이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 연장근로수당과 사회보험료에 각각 7.3%의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해당인상분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하기 위해 예산변경을 시행한 것으로 설명함.
- 이와 함께 국비 지원 거주시설인 송천한마음의집이 '25년 7월 폐쇄됨에 따라 해당 시설 이용인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 인건비가 시비 전액 지원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534백만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예산변경이 필요했다는 것이 집행기관의 설명임.
-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 특성상 종사자들이 교대근무를 통해 24시간 이용자와 함께 생활하는 구조이며, 법정 인력 배치 기준도 타 생활시설에 비해 이용인 4.7명당 2명으로 높은 편¹¹⁾임.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연장근로수당 및 사회보험료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인건비 증액 필요성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된다 하겠음.

11) 노숙인자활시설의 경우 생활지도원은 입소자 50명이상 시설은 2명 이상이면 가능하며, 50명 초과 이용자 25명마다 1명씩 추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당초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된 금액인 109,177,066천원 중 변경액 2,100,000천원은 약 1.9%에 해당하여,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변경 사유의 성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통상임금 구성요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24년 12월에 이루어졌고, 고용노동부 개정지침과 서울시 복지실의 내부공문 실시 역시 각각 '25년 2월, '25년 5월에 시행된 것으로 나타남. '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해당 판결 내용을 반영하기에는 시기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5년도에는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2회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예산변경보다 추경 편성을 통한 확보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변경은 장애인거주시설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복지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인건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25년도 예산 운용과정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뿐 아니라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도 동일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시설별 부족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26년도 예산에도 관련 인건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재점검하여, 향후 인건비 부족분이 반복적으로 예산변경이나 전용을 통해 사후처리 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은 전체 예산 16,391,154천원 가운데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1,690,000천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사업으로 감액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역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회 거주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인 만큼, 해당 감액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이나 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함.

3)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 및 재활치료, 소모품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임.
-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달팽이관에 전극선을 삽입하여 소리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임.
- 본 사업에서는 이식을 위한 수술비 및 수술에 소요되는 검사비 (최대 700만원), 수술 후 3년차까지 재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음.

※ 지원금액

- 이식수술: 수술비 및 수술에 소요되는 검사비(최대 700만원)
 - 수술비 잔액은 같은 해 재활치료비로 사용 가능
 - ※ 입원 병실료는 2인실까지 전액 지원,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2인실 지원 기준 병실료 차액은 본인 부담
- 재활치료: 매핑(mapping), 언어·청능 훈련치료비
 - (1년차) 최대 450만원 (2년차) 최대 350만원 (3년차) 최대 250만원
- 소 모 품: 인공달팽이관 배터리, 충전기 등 소모품 구입비(최대 36만원)
 -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대상자에게 소모품 구입비 지원

- 해당 사업은 2004년까지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05년부터 인공달팽이관 수술비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액 시비로 편성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음.
- 2025년 결산 결과 총 예산 178,140천원 가운데 92,395천원을 불용해, 불용률이 51.9%로 나타남.
- 해당 사업의 최근 지원실적과 결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저소득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지원 지원 실적('22~'25)

(단위 : 명/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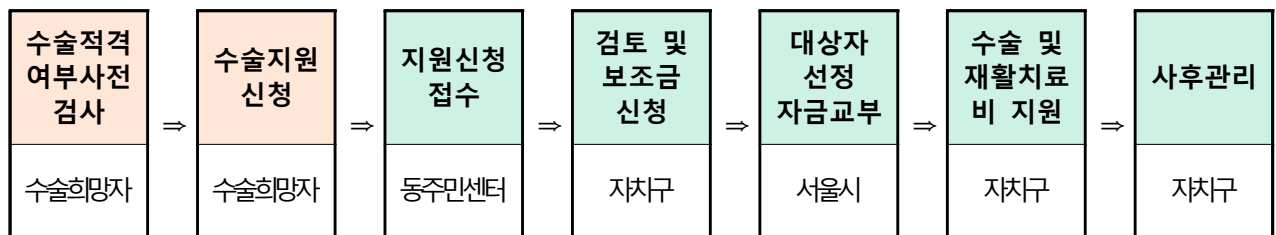
연도별	지원실적			지원규모
	인원	금액	내역	
2022	53	231,914	수술 7, 치료 46	수술 7,000천원, 치료4,500천원 범위내
2023	43	181,342	수술 9, 치료 34	수술 7,000천원, 치료4,500천원 범위내
2024	37	113,938	수술 10, 치료 27	수술 7,000천원, 치료4,500천원 범위내
2025	30	135,508	수술 9, 치료 21	수술 7,000천원, 치료4,500천원 범위내

<표> 저소득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지원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2	(x-) 232,300	(x-) 0	(x-) 0	(x-) 232,300	(x-) 198,642	(x-) 33,658	85.5%
2023	(x-) 213,420	(x-) 0	(x-) 0	(x-) 213,420	(x-) 129,270	(x-) 84,150	60.6%
2024	(x-) 178,140	(x-) 0	(x-) 0	(x-) 178,140	(x-) 113,938	(x-) 64,202	64%

-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인원과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신청자 수 대비 선정인원 등에 대한 통계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집행률 저조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림]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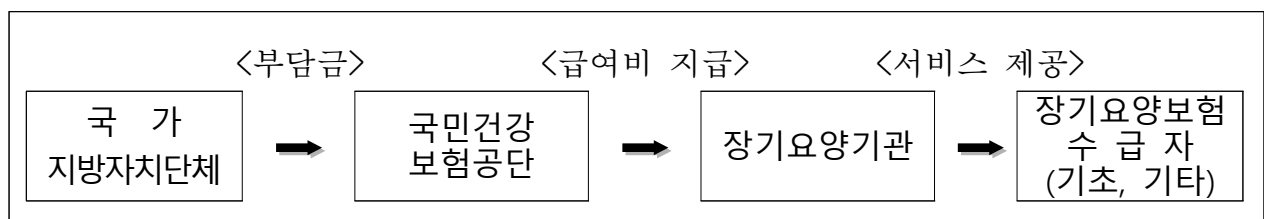
- 따라서 집행기관은 신청 및 선정, 포기 현황과 지원 제외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제 수요 감소, 사업 홍보 및 신청 절차의 한계 등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의료기관,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지역 내 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기간의 확대 또는 신청 방식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천시¹²⁾ 등 일부 지자체는 서울시와는 달리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타 지자체의 사례와 서울시의 최근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비교하여 현행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이 실제 지원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25년 기준 인천은 중위소득 150% 이하, 39세 이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총 사업 목표인원은 19명)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분담금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장기요양급여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시비 100%가 전액 지원되고 있고, 기타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시비50%:구비50%의 비율로 분담 지원되고 있음.

<표> 요양보험 의료급여재정 지급절차



- '25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내시액(280,391백만원) 대비 실제 지출액이 증가하여 의료급여 분담금에 대한 추가 예산 투입이 요청되었음
- '25년.3분기 기준 대상자수는 26,274명으로 '25년초 예상 지원자수 25,972명을 넘어서 통보액 대비 지출액이 3,917백만원을 초과함
- 이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전용·변경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부함
- 어르신요양 인프라구축 사업안에서 전용 101,041천원, 변경 133,745천원 총 234,786천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분담금으로 전용함
- 같은 단위사업 안에서 전용, 변경으로 각각의 세부사업별(어르신의료복지 시설 운영,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전용, 변경 금액은 1억 미만임

<표> '25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전용·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현액	비고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어르신 복지 수준 향상 및 장사시 설 내실 운영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01)	243,228,046	234,786	-	243,228,046	
		어르신 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6,400	-	1,100	5,300	전용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2,755,034	-	58,472	2,696,562	변경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2,047,482	-	161	2,047,321	변경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제 운영	민간이전(3 07)	사회복지사 업보조 (11)	18,597,900	-	844	18,597,056	변경
		어르신돌봄중 사자 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530,570	-	74,331	456,239	전용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3,662,273	-	36,268	3,626,005	변경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1,149,000	-	38,000	1,111,000	변경
			민간자본 이전 (402)	민간위탁 사업비 (03)	160,000	-	25,610	134,390	전용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최근 5년간 대상자의 평균 증가율은 5.4%, 분담금의 평균증가율은 7.8%에 이르고 있음. 특히 '25년에는 대상자가 6.4%, 분담금이 9.6%로 급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담금이 초과 지출된 상황이라고는 하나 예산 변동에 대해 추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25년 본예산은 '21년 예산보다도 적은 195,551백만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편성시부터 문제가 있었음

<표> 최근 5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분담금 내역

(시비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본예산액	204,998	241,288	223,858	216,112	195,551
최종예산	201,312	226,072	223,858	216,032	243,228
사업대상 (증가율)	20,094 6.50%	22,398 11.50%	23,431 4.60%	24,663 5.30%	26,247 6.40%
최종 분담금 (증가율)	199,134 7.00%	224,658 12.80%	235,586 4.90%	251,065 6.60%	275,177 9.60%
예치금 현황 (증가율)	57,377 28.80%	60,121 4.80%	66,991 11.40%	58,124 △13.2%	35,814 △38.4%

- 특히 예산 변경후에도 25,057,647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하면서 예비비 지출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표> 최근 5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년도	합계	편성액 (본예산+추경예산)	예산변경	예비비
2021	201,312,191	201,497,731	-185,540	
2022	226,072,115	226,258,115	-186,000	
2023	223,858,000	223,858,000		
2024	216,032,045	216,112,399	-80,354	
2025	247,199,832	217,051,399	5,090,786	25,057,647

※ 집행액 중 반환금 및 이월액은 제외함

- 예비비¹³⁾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음

<표> 2025 복지실 예비비 사용내역

연번	과 목			지출결정 액	지출액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세부사업	통 계 목			
1	돌봄 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분담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 보조재원)	21,320,647	21,320,647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분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해 예비비 사용
2	돌봄 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분담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보 조재원)	3,737,000	3,737,000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지급 정지시 국가 사회보험체계의 붕괴와 어르신들의 생존·안전과 직결된 돌봄서비스 중지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므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예비비를 집행함¹⁴⁾
-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분담금은 매년 증가하는 대상자와 분담금의 규모로 볼 때 증감을 추계할 수 있었을 것임. 또한 '25년 서울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이 20,000,000천원임을 감안할 때 이를 초과한 25,039,647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 책정 및 지출에 관한 전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사료됨

13)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예산과목: 일반예산(예비비), 예비비(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 이에 매년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재정 규모를 정밀하게 반영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정 소요 예산을 정상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면적인 예산 책정 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5) 서울밥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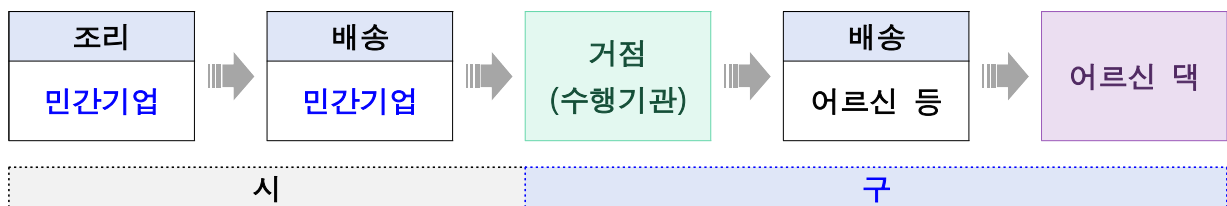
- '25년부터 저소득 어르신 급식 대기인원 해소를 위해 중앙집중화 조리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서울밥상을 운영함. 서울시에서 계약한 민간의 도시락·급식 제조업체에서, 자치구에서는 관리 운영하는 기관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수행기관에 공급 후 어르신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서울밥상 운영유형

☐ 운영유형 : 2개 유형

1 민간기업 활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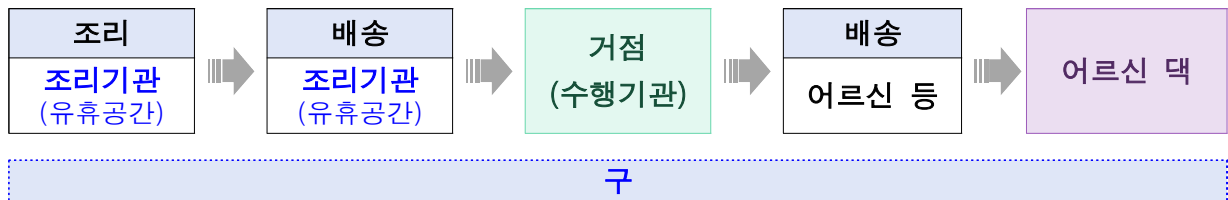
- 규 모 : 8개 자치구(200명 내외)
- 운영방식 : 용역계약(서울시 직접)
 - 주요과업 : 음식 조리, 음식 포장, 수행기관 등 거점까지 배송
- 운영과정 : 서울시에서 계약한 민간의 도시락·급식 제조업체가 음식을 조리, 구에서 지정한 (거점)수행기관에 공급 후 어르신덕으로 각각 배송



- (시) 예산확보, 음식 조리업체 계약, 거점까지 음식 배송
- (구) 수행기관(거점) 선정·관리, 대상자 선정·관리(식수인원 변경사항 반영 등), 어르신 덕까지 음식 배송

2 유휴공간 활용형

- 규 모 : 2개 자치구(200명 내외)
- 운영방식 : 자치구 자율(區 자체 운영 또는 용역 가능)
- 운영과정 : 자치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조리기관이 음식을 조리하여 수행기관에 공급, 수행기관은 어르신 댁으로 각각 배송



- (시) 예산확보, 인건비·운영비 지원
- (구) 수행기관(거점) 선정·관리, 대상자 선정·관리(식수인원 변경사항 반영 등), 어르신 댁까지 음식 배송, 조리기관 운영·관리

- ‘서울밥상’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 대기자 해소를 목적으로 2025년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기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과 운영방식의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나 지원 대상과 제공 서비스 측면에서는 도시락·밑반찬 배달 중심의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은 경로식당(무료급식),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동행식당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대상인원 32,580명, 수행기관 219개소에 달하고 있음.
- ‘서울밥상’은 주로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18개 자치구에서 845명정도를 민간기업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 서울밥상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사업비 일부를 활용하지 못하여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823,076천원(36.4%)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였음.

- 이는 사업 추진 규모와 집행 수요에 비해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대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표> '25년 서울밥상 전용 총액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 현액	증감	변경 후 예산액	사업내용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어르신 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서울밥상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261,860	△823,076	1,438,764	
		노인종합 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38,754,624	178,291	38,932,915	시간외근무수당
			(402-03) 민간위탁사업비	57,000	6,500	63,500	폭염용품지원 프로그램인건비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x174,248) 248,862	99,634	(x174,614) 348,496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402-03) 민간위탁사업비	(x626,211) 1,211,584	216,217	(x626,211) 1,427,801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x257,885) 458,233	57,454	(x257,885) 515,687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3,647,559	250,000	33,897,559	산분장지 조성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x3,916,000) 11,619,100	15,000	(x3,916,000) 11,634,100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유지보수

서울밥상 운영 예산 1차 전용 계획(어르신복지과-14982(25.7.10.))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및 노인종합복지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마련

- 탑골공원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냉장고를 설치하여 생수, 쿨토시 등 지급
- 탑골공원 복지정보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상담 제공
- (규제철폐 22호) 어르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시간 확대 (토요일 09:00~13:00 → 09:00~18:00)하여 어르신 여가문화 공간으로 제공

○ 추가 소요예산 : 193,431천원

- 탑골공원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관련 : 18,000천원
 - 냉장고 및 창고 설치비(4,500천원), 전기공사비(2,000천원), 안전용품비(10,000천원) 등
- 탑골공원 어르신 복지정보상담 관련 : 25,431천원
 - 상담인력 1인(12,931천원), 통신 및 전기 등 운영비(12,500천원)
- 시립노인복지관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등 : 141,360천원
 - (초과근무수당) 3명×19개소×20주×23천원×5시간 = 총 131,100천원
 - (특근매식비) 3명×19개소×20주×9천원 = 총 10,260천원

□ 전용사유

- 탑골공원(어르신 밀집지역) 어르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수, 쿨토시 등 안전용품 지원 필요
- 탑골공원 복지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상담인력 1명), 운영비 (통신, 전기, 사무비 등) 등 필요
- 규제철폐 22호(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로 선정되어 '25년 8월부터 시립 노인종합복지관(19개소)의 운영시간을 토요일 종전 09:00~13:00에서 09:00~18:00으로 연장 예정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원 필요

□ 전용계획

- 전용내용 : '서울밥상사업'의 사무관리비 193,431천원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

(단위: 천원)

예산 과목				예산 현액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39,073,484	184,791	△184,791	39,073,484
어르신 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서울밥상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261,860	-	△184,791	△2,077,069
		노인종합 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36,754,624	178,291	-	36,932,915
			(402-03) 민간위탁사업비	57,000	6,500		63,500

서울밥상 운영 예산 2차 전용 계획(어르신복지과-21094(25.10.15.))

□ 사업개요

①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 사업내용 :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지원
- 사업규모 : 14개소, 12건 사업 지원
- 소요예산 : 307백만원

② 서울추모공원 조각공원 리모델링(설계용역)

- 사업내용 : 추모공원 내 조각공원 수경시설 정비 및 경관 연출, 산책로 정비, 테마형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시행
- 사업규모 : 수경시설공사 1식, 잔디보식 500m², 초화류·관목식재 1식 등
- 소요예산 : 600백만원 (공사비 550백만원, 설계용역비 50백만원)

③ 서울추모공원 증설 화장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 사업내용 :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4기 증설에 따른 유지보수 및 정비
- 사업규모 : 연소로 세라믹 모듈, 로내대차 블록 교체·정비 등 9개 정비항목
- 소요예산 : 200백만원

④ 시립용미리1묘지(추모의 숲) 내 산분장지 조성

- 사업내용 :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신규 조성
※ 산분장 법제화(25.1월)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신규 산분장지 조성 요청(국비 70%)
- 사업기간 : 2025. 9월 ~ 12월
- 위치 및 규모 : 서울시립용미리1묘지 추모의숲(파주시 광탄면) / 500m²
- 소요예산 : 50백만원 (국비 35백만원, 시비 15백만원)

□ 전용사유

- 서울추모공원 조각공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시행 및 화장시설 증설에 따른 유지보수 및 정비 필요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필요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입소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화된 담장 기능보강 지원 필요

《 세부 매칭시비 내역 》

- 2025년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사업 본사업 및 추가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493호('25.3.20.), 3134호('25.6.26.)]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필요
- 산분장 법제화(2025.1월)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신규 산분장지 조성 요청[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974호('25.4.24.)]으로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조성을 위한 매칭 시비 확보 필요(국비 70%)

□ 전용계획

- 전용금액 : 총 638,305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 현액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638,305	△638,305	
어르신 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서울밥상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77,069	-	△638,305	1,438,764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x174,248) 248,862	99,634	-	(x174,614) 348,496
			(402-03) 민간위탁사업비	(x626,211) 1,211,584	216,217	-	(x626,211) 1,427,801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x257,885) 458,233	57,454	-	(x257,885) 515,687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3,647,559	250,000	-	33,897,559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x3,916,000) 11,619,100	15,000	-	(x3,916,000) 11,634,100

- 전용된 총 예산인 823,076천원은 탐골공원 일대 폭염예방 안전용품 지원, 탐골공원 복지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노인종합복지관 시간외근 무수당, 노인요양시설 증개축·개보수·장비보강, 서울추모공원 조각공원 리모델링(설계용역), 서울추모공원 증설 화장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시립용미리 1묘지 산분장지 조성 등에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는 서울밥상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업임.
- 「지방재정법」 상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서 집행상 불가피한 경우 허용되는 제도이나, 서울밥상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임에도 전체 예산 2,261,860천원의 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타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당초 사업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예산 편성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특히 2차 전용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장사시설 유지보수, 산분장지 조성 등 당초부터 예산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밥상 예산이 활용된 측면이 있어, 신규사업 예산이 사실상 다른 사업의 부족 재원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예산 전용 제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인 만큼, 대규모 전용이 반복될 경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고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신규사업 편성 시 사업수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전용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밥상 사업은 기존 급식지원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기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지원대상 및 제공서비스

측면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사업 간 기능과 역할의 차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특히 본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예산현액 대비 36.4%에 달하는 총 823백만 원을 타 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용함. 이는 당초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집행 여건과 수요 예측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함.
- 예산 전용 제도는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인 만큼, 신규사업의 대규모 전용 반복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고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 집행 가능성에 기반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예산 전용 행태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신규사업 편성 시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사업 시행 중 대규모 예산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예산 전용과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기금 운영 관련

가. 기금운용 결산 총괄

- 복지실에서는 사회복지기금 3개 계정(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과 재난관리기금 1개 계정(구호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2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818억 7천만원으로 이는 직전 회계연도(1,803억 3천만원)보다 14억 8천7백만원 증가한 것임.

<표> 2025년도 복지실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5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계	180,330	1,487	76,363	74,876	181,81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2,132	24	517	493	12,156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1,810	△118	3,842	3,960	21,69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9,308	△148	829	977	9,16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37,080	1,729	71,175	69,446	138,809

-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하는 일반예산과 달리 집행기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유연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반면 예산의 변경사용이 용이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목적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함.
- 따라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가 담보될 필요가 있음.

나.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5조¹⁵⁾에 따라 운영 중이며, '25년 연도말 조성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5년도	2024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12,132	12,045	87	
	예치금잔액	642	555	87	전년도 결산결과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가
	예탁금잔액	11,490	11,490	0	
운용수입	합계	1,159	1,229	△70	
당해 연도 조성 ㉡	소 계	517	673	△156	
	전입금	-	-	-	
	보조금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예수금	-	-	-	
	이자수입	405	500	△95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1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5조(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노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7.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노인교육사업
9.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분	주요항목	2025년도	2024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기타수입	112	173	△61	노인의집 사업종료에 따른 용자 회수금 감소 등
	예탁금원금회수	-	-	-	
	예치금회수	642	555	87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동
운용지출	합계	1,159	1,229	△70	
당해 연도 사용 ㉔	소 계	493	587	△94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492	585	△93	'24년 복지정보안내소 운영, 민간 무료급식 실태조사 사업 종료에 따른 지출 감소
	용자성사업비	-	-	-	
	기본경비	1	2	△1	위원회 서면심의 진행 등으로 지출 절감
	차입금원리금상환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기타지출	-	-	-	
	예탁금	-	-	-	
	예치금	666	642	24	전년도 결산결과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가
당해연도 현재액 ㉕+㉖-㉔	조성현재액	12,156	12,132	24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666	642	24	전년도 결산결과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가
	예탁금	11,490	11,490	-	

- '25 회계연도 집행기관에서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을 사용해 총 5개의 목적 사업에서 5억 4천만원을 운용하였으며, 이 가운데 4억9천2백만원을 집행해 사업의 집행률은 91.1%로 나타남.

<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지출결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계획액		지출액 ㉞	지출잔액 ㉞-㉠	집행률 ㉞/㉠	비 고
	당 초	최 중 ㉠				
계	1,026,596	1,162,714	1,159,121	3,593	99.7%	
목적사업비 소계	461,740	539,890	492,442	47,448	91.2%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	280,000	280,000	280,000	-	100.0%	
어르신 정보화 교육	40,000	40,000	40,000	-	100.0%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운영 지원	240,000	240,000	240,000	-	100.0%	
어르신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	109,500	109,500	109,500	-	100.0%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109,500	109,500	109,500	-	100.0%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 지원	72,240	150,390	102,942	47,448	68.5%	
어르신 주거지원	72,240	72,240	24,792	47,448	34.3%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	78,150	78,150	-	100.0%	
예 치 금	561,856	619,824	665,679	△45,855	107.4%	
기 본 경 비	3,000	3,000	1,000	2,000	33.3%	

- 어르신 주거지원사업은 노인의집(노인공동생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부대비용(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5년도에는 지원 가구수가 전년대비 34가구에서 30가구로 감소하였음에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72,24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24,792천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은 3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3년 저소득 주거지원 지원가구 및 집행 현황

연도	지원가구수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3	35	68,800	23,629	45,171	34.3%
2024	34	72,240	70,227	2,013	97.2%
2025	30	72,240	24,792	47,448	34.3%

- 집행기관에서는 지원가구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점을 집행률 저조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도에도 예산 68,800천원 중 23,629천원만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4.3%에 그친 바 있어, 낮은 집행률은 특정연도에 한정된 문제라기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임대보증금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계약 및 재계약 주기, 신규 입주 여부 등에 따라 연도별 집행액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임대보증금은 통상 계약주기에 따라 2년 단위로 집행수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연간 집행률 만으로 사업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는 보증금 지원 발생주기와 실제 지원가구 변동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 노인지원주택 등 저소득 어르신 1인 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를 선택할 여지도 존재하는 만큼, 공동생활주택 방식에 대한 실제 선호와 수요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음. 아울러 본 사업은 자치구의 수요 요청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자치구별 신규 입주가구 발굴 현황과 입주 희망 수요에 따라 집행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음.
- 따라서 집행기관은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의 원인을 단순히 지원가구 수의 감소로 설명하기보다 임대 보증금 집행주기, 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실제 수요, 자치구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향

후 예산 편성시 실제 지원가능 수와 보증금 집행 예정액을 면밀히 반영하고, 필요시 사업방식 및 수요 발굴체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6조16) 에 따라 운영 중이며, 2025년 연도말 조성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5년도	2024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21,810	22,572	△762	
	예치금잔액	7,410	8,172	△762	결산결과 반영에 따른 예치금 감소
	예탁금잔액	14,400	14,400	-	
운용수입	합계	11,251	10,863	388	
당해 연도 조성 ㉡	소 계	3,841	2,690	1,151	
	전입금	-	-	-	
	보조금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112	1,800	1,312	상환기일 도래 가구 증가에 따른 전세보증금(융자금) 회수 증가 ('24년 15가구 → '25년 24가구)
	예수금	-	-	-	
	이자수입	729	890	△161	공급예금 이자율 변동
	기타수입	-	-	-	

1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분	주요항목	2025년도	2024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예탁금원금회수	-	-	-	
	예치금회수	7,410	8,172	△762	
운용지출	합계	11,251	10,863	388	
	소 계	3,959	3,453	506	
	비용자성사업비 (고유목적)	-	-	-	
당해 연도 사용 ㉔	용자성사업비	3,951	3,445	506	매물 물색의 어려움, 타 주거사업 중복선정 등으로 계약 포기가구 발생(집행률 53.4%)
	기본경비	8	8	-	
	차입금원리금상환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기타지출	-	-	-	
	예탁금	-	-	-	
	예치금	7,292	7,410	△118	
당해연도 현재액 ㉕+㉖-㉔	조정현재액	21,692	21,810	△118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7,292	7,410	△118	결산결과 반영에 따른 예치금 감소
	예탁금	14,400	14,400	-	

- 현재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에서는 용자사업인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만을 진행중에 있으며, '25년도 해당사업 예산은 74억원이었으나, 실행액은 34억 4천5백만원으로 집행률은 53.4%로 나타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필요성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집행기관에서는 '26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을 33억 8천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전세주택 지원사업(27억 2천만원)외에도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세주택(4억 6천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2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존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지원대상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업대상의 다변화가 기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별 지원 수요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라.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¹⁷⁾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¹⁸⁾에 따라 운영 중이며,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5년도	2024년도	증 감	사유(상세허)
----	------	--------	--------	-----	---------

- 17) 「국민기초생활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8조(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서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12.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3.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구분	주요항목	2025년도	2024년도	증 감	사유(상세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9,308	9,854	△546	
	예치금잔액	4,888	5,434	△546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동
	예탁금잔액	4,420	4,420	0	
운용수입	합계	5,717	5,952	△235	
당해 연도 조성 ㉡	소 계	829	518	311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40	109	231	융자금 회수액 증가 : 점포 '24.3개소 75백만원 → '25.6개소 240백만원/ 매입대 '24.1호 16백만원 → '25.5호 78.2백만원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337	404	△67	정기예금/예탁금 등 이자율 변동('24.4.5%평균 → '25.3.9%평균/'24.4.4% 평균→'25.3.6%평균)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기타수입	152	5	147	내일키움수익금환수액 발생(증 109백만원) 및 서울광역자활센터 집행잔액 증가분(증 38백만원) 반영에 따른 기타수입 증가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4,888	5,434	△546	
운용지출	합계	5,717	5,952	△235	
당해 연도 사용 ㉢	소 계	977	1,064	△87	
	비용자성사업비 (고유목적)	573.16	643	△70	서울광역자활센터 자활기금사업 예산 감소
	융자성사업비	399.05	418	△19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신청 수요 재조사결과 융자 실지원 지출액 감소 : '24.11개소 418백만원 → '25.10개소 399백만원
	기본경비	4.32	3	1	자활기금심의위원 수당, 기타 기금사업 인쇄비 등 관련 집행액 증가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구분	주요항목	2025년도	2024년도	증 감	사유(상세허)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4,740	4,888	△148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예치금 감소
당해연도 현재액 ①+②-③	조성현재액	9,160	9,308	△148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4,740	4,888	△148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예치금 감소
	예탁금	4,420	4,420	0	

- 집행기관에서는 '25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을 활용해 총 57억 6,94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본경비 및 예치금을 제외한 비용자성 사업 5개의 집행률은 100%, 융자성 사업 1개의 집행률은 88.9%로 나타나고 있음.

<표> '25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지출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		지출액 ④	집행률% ⑤=④/⑦	비고
		당초	변경⑥			
총 계		5,249,567	5,633,429	5,716,943	101.5	
비용 자성 사업 비 (서울 광역 자활 센터)	소 계	573,155	573,155	573,155	100.0	
	자활종합경영 지원사업	80,000	80,000	80,000	100.0	경영컨설팅, 시설장비 등 지원
	자활교육훈련	110,110	110,110	110,110	100.0	종사자·참여자 교육 훈련 실시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272,045	272,045	272,045	100.0	서울형자활사업 자활사업단(자활기 업) 등 지원
	자활유통 활성화	55,000	55,000	55,000	100.0	공공장터 추진, 판로개척 등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56,000	56,000	56,000	100.0	자활사업 현황 조사·연구, 보고서 책자 발간 등

구 분		2025년 예산		지출액 ㉔	집행률% ㉔ = ㉔/㉕	비고
		당초	변경㉖			
융자성 사업비	전세점포 임대 자금 융자지원	309,050	449,050	399,050	88.9	임차보증금 지원 (점포 10개소)
기본경비		5,000	5,000	4,323	86.5	
예치금		4,362,362	4,606,224	4,740,415	102.9	'25회계연도 사금고잔액 (결산액 반영)

- 비용자성 사업은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활계정 기금을 광역자활센터로 교부하게 되며, 집행 잔액은 내년도 수입에 포함됨.
- 전년도 자활계정에서는 융자금 환수 항목에서 최종예산 184,200천원보다 172.75%를 초과한 318,200천원을 수납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융자사업인 전세점포 임대자금에서 대부분 6년 연장 만료후에 상환하고 있으나, 전년도의 경우 점포 폐업(강서센터)과 자체재원 활용(광진센터) 등으로 조기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른 것임.

마.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19)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를 통한 이재민 보호가 그 목적임.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5년도	2024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㉔	전년도이월금	137,080	141,108	-4,028	
	예치금잔액	137,080	141,108	-4,028	
	예탁금잔액	-	-	-	

19)「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구분	주요항목	2025년도	2024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운용수입	합계	208,255	206,578	1,677	
	소 계	71,175	65,470	5,705	
당해 연 도 조성 ㉔	전입금	57,606	57,093	513	법령에 따라 우리 시 보통세입결산액에 비례하여 증가함
	보조금	5,699	-	5,699	2025 여름철 호우 재난지원금 중 국비분 수령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예수금	-	-	-	
	이자수입	4,485	5,063	-578	금리 하락
	기타수입	3,385	3,314	71	-
	예탁금원금회수	-	-	-	
	예치금회수	137,080	141,108	-4,028	대규모 현금지출 사업(기초수급 및 차상위 대상 냉난방비 현금지원 등)으로 인한 적자 폭 증가
운용지출	합계	208,255	206,578	1,677	
	소 계	69,446	69,498	-52	
당해 연 도 사용 ㉕	비용자성사업비(고 유목적)	68,842	69,498	-656	코로나-19 관련 사업 폐지로 인한 각종 방역비·마스크 구매비 감소
	융자성사업비	-	-	-	
	기본경비	5	-	5	기금위원회 심의수당 분리독립(비용자성사업비 내 “이재민 재해보상”사업 사무관리비 → 기본경비 내 “기금관리비” 사업 사무관리비

구분		주요항목	2025년도	2024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차입금원리금상환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기타지출	599	-	599	행정안전부 고지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
	예탁금		-	-	-	
	예치금		138,809	137,080	1,729	
당해연도 현재액 ㉠+㉢-㉣		조성현재액	138,809	137,080	1,729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138,809	137,080	1,729	우리시 세입결산액 소폭 증가에 비례한 기금수입 증가, 코로나-19관련 사업 종료에 따른 세출 소폭 감소에 따른 예치금 증가
		예탁금	-	-	-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은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3개의 목적사업과 기금관리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사업별 집행액은 다음과 같음.

<표> '25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집행액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실제 지출액 (C)	비율 (C/B)
		당 초(A)	수 정(B)		
	계	181,717,118,000	201,131,118,000	208,255,187,550	103.5%
이재 민 재해 보상	사무관리비	2,300,000	2,300,000	0	0.0%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 상금	335,000,000	59,022,780,000	55,034,965,250	93.2%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600,000,000	8,202,000,000	8,005,400,000	97.6%
의료 및 구호 비지 원	사무관리비	415,610,000	2,508,011,000	1,564,663,350	62.4%
	공공운영비	10,220,000	10,220,000	7,988,080	78.2%
무더 위험 터 냉방 비지 원	사무관리비	0	15,400,000	15,398,350	100.0%
	사회복지사 업보조	133,840,000	975,400,000	920,065,250	94.3%
	민간위탁금	0	62,800,000	62,800,000	100.0%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4,259,404,000	4,259,404,000	3,230,775,000	75.9%
반환 금기 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408,163,000	599,390,000	599,389,230	100.0%
기금 관리 비	사무관리비	5,400,000	5,400,000	4,713,380	87.3%
여유 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175,547,181,000	125,468,013,000	138,809,029,660	110.6%

바.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

- '25 회계연도 복지실 기금사업 중 고유목적사업은 15개로, 당초 지출계획 현액 840억 2천만원 중 742억 5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97억 6천2백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11.6%)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집행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 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미집행액	미집행률
합 계		15	84,020	74,258	-	9,762	11.6
사회복지기 금	노인복지 계	5	540	493	-	47	8.7
	장애인복지 계	1	7,400	3,951	-	3,449	46.6
	자활계	6	1,022	972	-	50	4.9
재난관리 기금	구호계	3	75,058	68,842	-	6,216	8.3

-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경비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기금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금운영 결과 사업비에서 발생된 불용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기금의 사업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용액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둔감한 재정환경을 가지고 있음.
- 기금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재원의 안정화로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반면 기금이 남설되거나 목적 및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저해할 수 있음.²⁰⁾

-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기금 지출사업예산 편성시에 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출사업예산 이월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효율적 기금운영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예산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 서정섭(2019),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89-111